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14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책임운영기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약어표

- 연방 ABS법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7
- 사라왁주 법 사라왁생물다양성규칙
Sarawak Biodiversity Regulations 2016
- 사바주 법 사바생물다양성법
Sabah Biodiversity Enactment 2000

- PIC 사전통고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 MAT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 이익공유협약 Benefit Sharing Agreement
MAT에 따라 체결된 당사자 간 이익공유에 관한 계약

- ILC/NLC 토착지역공동체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 Native and Local Community
- R&D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ment
- SaBC 사바생물다양성센터
Sabah Biodiversity Centre
- SD 법정신고서
Statutory Declaration
- SORAS 사라왁 온라인 연구신청 시스템
Sarawak Online Research Application System

Chapter

1

제1절 말레이시아 ABS 법률 개요	7
I. ABS 법률 현황	8
II. ABS 용어 정의(연방 ABS 법)	12
III. ABS 담당 기관	15

Chapter

2

제2절 말레이시아 ABS 절차 개요	19
----------------------------------	----

Chapter

3

제3절 연방 ABS법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 ..	23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24
II. 연방 ABS법의 상세 내용	35
1. 접근허가 대상과 활동	35
2. 접근절차	36
3. 책임기관 접근허가	38
4. 허가증 발급절차	41
5. 금지사항	43
6. 이익공유	44
7. 처벌규정	47

Chapter

4

제4절 사바 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49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50
1. 개요	50
2. 세부 절차	52
II. 사바 주 법의 상세 내용	58
1. 접근허가 대상	58
2. 사전 필수 요건	58
3. 허가서 발급 이후 절차(도착 가이드라인)	59
4. 접근/반출에 대한 준수요건	61
5. 처벌규정	62
6. 이익공유 절차 및 방법	63

Chapter

5

제5절 사라왁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65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66

1. 개요 66

2. 세부 절차 68

II. 사라왁 주 법의 상세 내용 77

1. 사전통고승인(PIC) (22-26조) 77

2. 상호합의조건(MAT) (14조) 79

3. 이익공유의 내용 (부칙) 79

4. 처벌규정(38조) 81

5. 수수료(36조) 81

부록

1.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2020)상 허가신청서 84

2. 사전통고승인(비상업적 목적) 서식 91

3. 사전통고승인(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 서식 97

4. 이익공유계약(안) 서식 104

5. 서식-SCHEDULE 1 129

6. 서식-SCHEDULE 2 131

7. 서식-SCHEDULE 3 133

8. 서식-법정신고서 139

9. 사바 주 접근신청 서식 143

10. 사바주 물질반출신고서 151

11. 사바주 법정신고서 서식 153

제 1 절

말레이시아 ABS 법률 개요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말레이시아 ABS 법률 개요

I ABS 법률 현황

- 말레이시아 연방법인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이 2017년 10월 17일 제정된 이후, 2020년 12월 17일 하위법령인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2020년 12월 18일 두 법이 함께 발효되었음
 -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동말레이시아에 속하는 사바 주와 사라왁 주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별도의 법률과 규칙에 의해 규율되어 왔음
 - 사바 주는 2000년 ‘사바생물다양성법’, 사라왁 주는 2016년 ‘사라왁생물다양성규칙’에 따라 생물자원 ABS 절차를 집행 중에 있음

• 말레이시아는 아래와 같이 서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반도)와 동말레이시아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짐



- 서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 반도)는 11개의 주와 2개의 연방직할구로 구성
 - 조호르, 말라카, 네게리셈빌란, 셀랑고르, 페라크, 페낭, 케다, 페르리스, 켈란타, 파항, 테렝가누, 쿠알라룸푸르 연방 직할구, 푸트라자야 연방 직할구
- 동말레이시아는 2개의 주와 1개의 연방 직할구로 구성
 - 사라왁, 사바, 라부안 연방 직할구

○ 말레이시아 ABS 주요 국내법규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 말레이시아 ABS 관련 주요 국내법규

구 분	관련 법규	제정일	시행여부
연방법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7.10.17.	시행중 (2020.12.18. 발효)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	2020.12.17.	시행중 (2020.12.18. 발효)
사바주법	사바생물다양성법 (Sabah Biodiversity Enactment 2000)	2000.5.1.	시행중
사라왁주법	사라왁생물다양성규칙 (Sarawak Biodiversity Regulations 2016)	2016.1.28.	시행중

•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2017)

- 말레이시아 연방법인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2017)(이하 ‘연방 ABS법’이라 함)’은 총 10개 장, 6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자원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2. 말레이시아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구성

장	내 용
제1장	총칙
제2장	기관
제3장	생물자원 접근을 위한 허가 요건
제4장	허가, 등록, 기록 및 처분
제5장	허가 취소 및 항소
제6장	감독 및 추적
제7장	정보센터(CHM)
제8장	이용자 조치
제9장	집행, 압류, 체포 등에 관한 권한
제10장	기타 규정

•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2020)

- 말레이시아 연방법인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2020)’은 총 16개 조문과 2개의 부속문서(허가신청서류/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음

표 3. 말레이시아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 구성

조	내 용
제1조	명칭/ 시행일
제2조	자문위원회
제3조	자문기구
제4조	허가 신청
제5조	승인이나 거절의 통지
제6조	허가 발행
제7조	기밀 정보
제8조	생물자원 처분 기록
제9조	이익공유합의
제10조	사전통고승인
제11조	후속청구
제12조	모니터링과 추적 방법
제13조	특허를 위한 신청 통지
제14조	허가 없는 이용 또는 상업화 방지 방법
제15조	등록 유지의무
제16조	연구자의 상세 기록 의무

• 사라왁생물다양성규칙(2016)

- ‘사라왁생물다양성규칙(2016)’은 총 7개 장, 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자원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4. 말레이시아 사라왁생물다양성 규칙 구성

장	내 용
제1장	총칙
제2장	연구개발목적의 생물자원 접근
제3장	잠재적 상업목적 및 상업목적 연구개발
제4장	보호자원의 번식
제5장	정보에 기초한 사전 동의
제6장	목록 및 보관소
제7장	기타 규정

• 사바생물다양성법(2000)

- '사바생물다양성법(2000)'은 총 6개 장,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물자원 접근허가 및 이익공유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5. 말레이시아 사바생물다양성법 구성

장	내 용
제1장	총칙
제2장	사바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립
제3장	기금 설립
제4장	접근 신청
제5장	법적 절차, 위반 및 처벌
제6장	기타 규정

II ABS 용어 정의(연방 ABS 법)

○ 동물(animal)

- 생존여부 및 성숙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포유류(인간 제외), 조류, 파충류, 양서류, 절지동물, 무척추 동물
- 인식 가능한 동물의 일부 또는 그 파생물
- 야생동물보호법(2010)에 정의된 야생동물
- 어업법(1985)에 정의된 어류

○ 중개인(authorized intermediary)

- 상업적 목적(법 제12조) 또는 비상업적 목적(법 제15조)으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허가를 취득하려는 신청자가 대리인으로 지정한 자

○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

- 유전자원, 생물, 미생물, 파생물 및 유전자원/생물/미생물/파생물의 일부
- 인류에게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사용되거나 그러한 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개체군 및 생물성분
- 위와 관련된 정보

○ 파생물(derivative)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것과 관계없이, 생물자원에서 파생, 개발 또는 합성되어, 또는 생물 자원이나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 또는 대사작용의 결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생화학적 화합물
- 부분, 조직 또는 추출물
- 파생물과 관련된 정보

○ 유전자원(genetic resource)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고 있고 인류에 대해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균류 및 다른 기원 물질

○ 토착공동체(indigenous community)

- 말레이시아 본토(서말레이시아)의 경우, 원주민법(1954)에 정의된 원주민(aborigines)
- 사바와 사라왁의 경우, 연방 헌법 제161조a 제6항에 정의된 원주민(natives)
- 원주민(aborigines, natives)의 언어를 구사하며, 전통적인 생활 관습, 신앙에 따라 이를 구현하고 있는 사람

○ 지역사회(local community)

- 공동으로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생산 프로세스와 문화를 계승하는 사람들의 모임 또는 마을이나 지역에 정착하여 하나의 생태 문화적 체계시스템에 따라 공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

○ 미생물(microorganism)

- 불임성/무균 생물(sterile organisms),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viroid)를 포함하여 현미경적 크기의 생물 및 그 일부

○ 허가(permit)

- 법 제1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허가

○ 허가증 보유자(permit holder)

- 법 제13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권한을 보유하는 자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분석, 샘플링, 생물검정(bioassaying)과 이론제시(inventorising) 또는 기타 분류학적 연구를 포함한 방법에 의한 연구, 시스템 조사 또는 기술 적용 및 잠재적 상업적 상품개발

○ 자원제공자(resource provider)

- 현지 내(in-situ) 조건으로 생물자원을 보유한 연방정부 또는 주 당국
- 현지 외(ex-situ)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자원이 유래된 연방정부 또는 주 당국
- 생물자원의 기원이 상당한 주의의무로 확인될 수 없는 경우, 컬렉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지 외 조건으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부처, 기관 또는 국립대학
- 이하의 상황에서 자원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 곳의 연방정부나 주 당국
 - 민간기구가 현지 외 조건으로 보유한 생물자원
 - 사유지에서 취득된 생물자원
 - 생물자원의 원산지(기원)가 상당한 주의의무로 확인될 수 없는 상황
-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법에 의해 권리를 보유한 토지에 자원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
-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한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전통적 치료자인 공동체 구성원을 포함)
- 생물자원이 어떤 개인의 신체에서 취득되는 경우, 해당 개인

○ 취득(take)

- 동물과 관련하여, 채취(harvest), 포획(catch, capture, trap), 죽이는 것(kill)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
- 식물과 관련하여, 수확(harvest), 수집(collect, gather), 채집(pick, gather), 절단(cut)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
- 미생물과 같은 생물자원과 관련하여, 수집(collect), 채집(pick)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
- 이외에 방식으로 생물자원/전통지식을 획득하는 것

○ 멸종위기 분류군(threatened taxa)

- 2008년 멸종위기종국제거래법(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Act 2008) 별표 3의 부록 I, II 및 III 목록에 포함된 심각하게 멸종위기의 종 또는 멸종에 취약한 종

III ABS 담당 기관

<p>국가연락기관 (NF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연에너지부/ 생물다양성산림관리국 (Biodiversity and Forestry Management Division /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홈페이지: http://www.ketsa.gov.my/en-my/Pages/default.aspx - 주소: Level 12, Wisma Sumber Asli No. 25, Persiaran Perdana, Precint 4 Putrajaya, 62574, Malaysia - 이메일: norsham@kats.gov.my, arief@kats.gov.my - 전화: +603 8886 1443 - 팩스: +603 8890 4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자 - 이름: Norsham Binti Abdul Latip - 부서: Biodiversity and Forestry Management /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직위: Undersecretary - 이메일: norsham@ketsa.gov.my - 전화: +603 8886 1442 																							
<p>국가책임기관 (NCP)</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상지역</th> <th>책임기관</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 연방령 (Federal Territory of Kuala Lumpur, Labuan, Putrajaya)</td> <td>연방령부 (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td> </tr> <tr> <td>2</td> <td>조호르 (Johore)</td> <td>조호르주 경제기획부서 (Johor State Economic Planning Unit)</td> </tr> <tr> <td>3</td> <td>케다 (Kedah)</td> <td>케다주 경제기획부서 (Kedah State Economic Planning Unit)</td> </tr> <tr> <td>4</td> <td>켈란탄 (Kelantan)</td> <td>켈란탄주 경제기획부서 (Kelantan State Economic Planning Unit)</td> </tr> <tr> <td>5</td> <td>말라카 (Melacca)</td> <td>말라카주 경제기획부서 (Melaka State Economic Planning Unit)</td> </tr> <tr> <td>6</td> <td>네게리셈빌란 (Negeri Sembilan)</td> <td>네게리셈빌란주 산림국 (Negeri Sembilan State Forestry Department)</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지역	책임기관	1	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 연방령 (Federal Territory of Kuala Lumpur, Labuan, Putrajaya)	연방령부 (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	2	조호르 (Johore)	조호르주 경제기획부서 (Johor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3	케다 (Kedah)	케다주 경제기획부서 (Kedah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4	켈란탄 (Kelantan)	켈란탄주 경제기획부서 (Kelantan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5	말라카 (Melacca)	말라카주 경제기획부서 (Melaka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6	네게리셈빌란 (Negeri Sembilan)	네게리셈빌란주 산림국 (Negeri Sembilan State Forestry Department)		
구분	대상지역	책임기관																						
1	쿠알라룸푸르, 라부안, 푸트라자야 연방령 (Federal Territory of Kuala Lumpur, Labuan, Putrajaya)	연방령부 (Ministry of Federal Territories)																						
2	조호르 (Johore)	조호르주 경제기획부서 (Johor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3	케다 (Kedah)	케다주 경제기획부서 (Kedah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4	켈란탄 (Kelantan)	켈란탄주 경제기획부서 (Kelantan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5	말라카 (Melacca)	말라카주 경제기획부서 (Melaka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6	네게리셈빌란 (Negeri Sembilan)	네게리셈빌란주 산림국 (Negeri Sembilan State Forestry Department)																						

	구분	대상지역	책임기관
	7	파항 (Pahang)	파항주 경제기획과 (Pahang State Economic Planning Division)
	8	페낭 (Pehang)	페낭주 경제기획부서 (Penang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9	페라크 (Perak)	페라크주 경제기획부서 (Perak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10	페를리스 (Perlis)	페를리스주 경제기획부서 (Perlis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11	셀랑고르 (Selangor)	셀랑고르주 경제기획부서 (Selangor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12	테렝가누 (Terengganu)	테렝가누주 경제기획부서 (Terengganu State Economic Planning Unit)
	13	사바 (Sabah)	사바 생물다양성이사회 (Sabah Biodiversity Council)
	14	사라왁 (Sarawak)	도시개발천연자원부 (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and Natural Resources)
국가점검기관 (NCP)	정보 없음		

○ 연방정부 문의처(2021.8.30. 기준)

• 허가신청 등 행정적 문제

- 담당자: Mr. Arief Iskandar Mohamad

* 직위: Principal Assistant Secretary

* 부서: Biodiversity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주소: Aras 12, Wisma Sumber Asli, No.25 Persiaran Perdana, Presint 4, 62574
Putrajaya, Malaysia

* 전화: +603 8886 1134

* 팩스: +603 8890 4021

* 이메일: arief@ketsa.gov.my

- 담당자: Ms. Nur Farahin Masran
 - * 직위: Assistant Secretary
 - * 부서: Biodiversity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 주소: Aras 12, Wisma Sumber Asli, No.25 Persiaran Perdana, Presint 4, 62574
Putrajaya, Malaysia
 - * 전화: +603 8886 1080
 - * 팩스: +603 8890 4021
 - * 이메일: farahin@ketsa.gov.my

• 시스템 문제

- 담당자: Mr. Yasser Mohamed Arifin
 - * 직위: Assistant Secretary
 - * 부서: Biodiversity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 주소: Aras 12, Wisma Sumber Asli, No.25 Persiaran Perdana, Presint 4, 62574
Putrajaya, Malaysia
 - * 전화: +603 8886 1446
 - * 팩스: +603 8890 4021
 - * 이메일: yasser@mybis.gov.my

- 담당자: Ms. Nuralyaa Jamalullail
 - * 직위: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 * 부서: Biodiversity Management Division/ Ministry of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 * 주소: Aras 12, Wisma Sumber Asli, No.25 Persiaran Perdana, Presint 4, 62574
Putrajaya, Malaysia
 - * 전화: +603 8886 1134
 - * 팩스: +603 8890 4021
 - * 이메일: nuralyaa@mybis.gov.my

○ 사바 주 문의처(2021.8.30. 기준)

- 담당자: Ken Kartina Khamis
 - * 부서: Sabah Biodiversity Centre/ Natural Resources Office, Chief Minister's Department
 - * 주소: 19th Floor, Block A, Sabah State Administrative Building 88400 Kota Kinabalu
Sabah, Malaysia

- * 전화: +6088-369 080
- * 팩스: +6088-250 753
- * 이메일: sabc@sabah.gov.my, sabc.sabah@gmail.com

○ 사라왁 주 문의처(2021.8.30. 기준)

- 담당자: JadyN Nicholas
 - * 직위: Administrative Officer
 - * 부서: Sarawak Biodiversity Centre
 - * 주소: KM20, Jalan Borneo Heights, Semengoh Locked Bag No. 3032, 93990 Kuching
Sarawak, Malaysia
 - * 전화: +6082 610610 ext. 133
 - * 팩스: +6082 611535
 - * 이메일: jadyN@sbc.org.my

제 2 절

말레이시아 ABS 절차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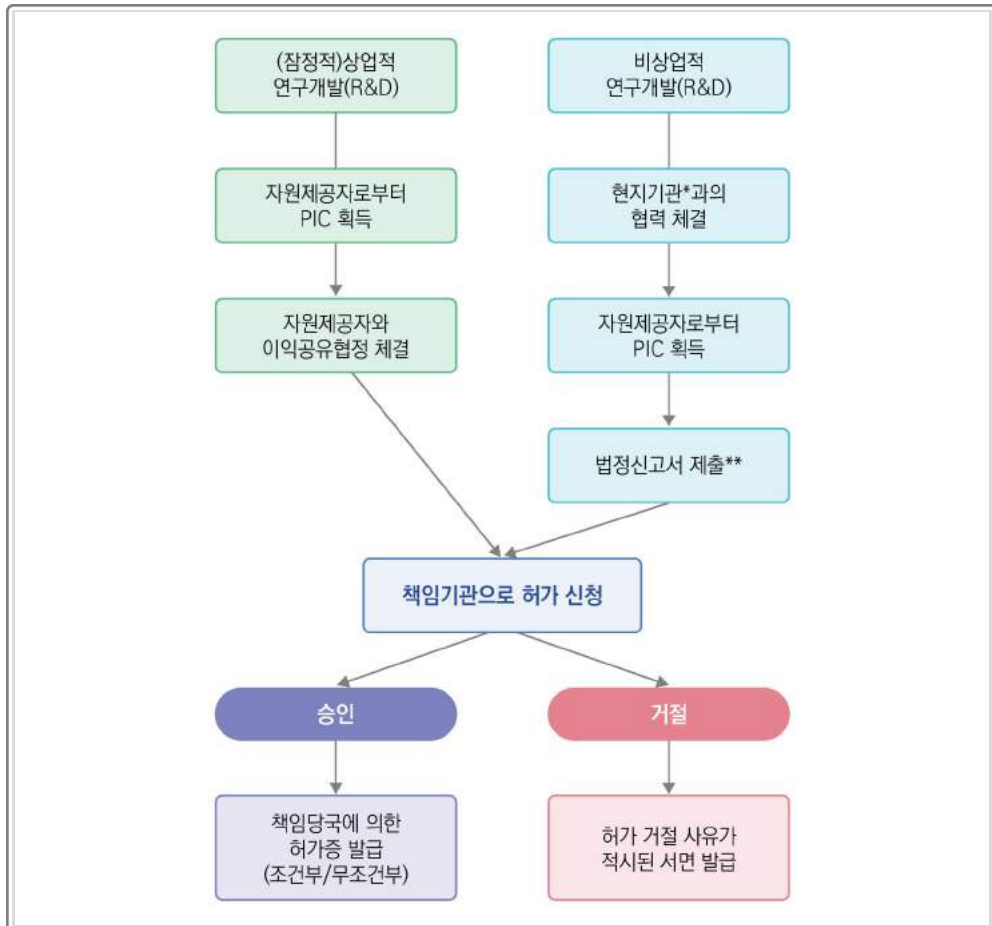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말레이시아 ABS 절차 개요

- 말레이시아는 연방, 사바 주, 사라왁 주에 각각의 ABS 관련 법률과 생물자원 접근 및 반출 신청을 위한 온라인허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ABS 온라인허가시스템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음
 - 연방: <https://www.myabs.gov.my/> (자세한 내용은 제3절 참조)
 - 사바 주: <https://www.sbc.org.my/> (자세한 내용은 제4절 참조)
 - 사라왁 주: <https://sabcapps.sabah.gov.my/> (자세한 내용은 제5절 참조)
- 말레이시아 ABS 제도의 절차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연방 ABS
 - (잠재적인) 상업적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연방 ABS 관할 하에 있는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① 자원제공자(토착공동체)로부터 PIC을 획득하고, ②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한 후, ③ 관할 책임기관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비상업적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연방 ABS 관할 하에 있는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① 자원제공자(토착공동체)로부터 PIC을 획득하고, ② 관할 책임기관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 다만, 비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현지기관(말레이시아 국립대학,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과의 협력의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책임기관으로 허가신청시(온라인) 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표 6. 연방 ABS법의 허가 신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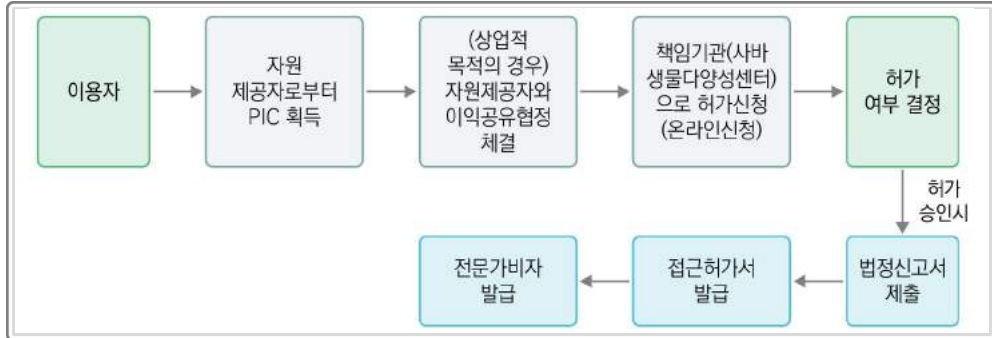


* 말레이시아 내 공공교육기관(대학),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 온라인 상 제출

• 사바 주 ABS

- 상업적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바 주에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① 자원제공자(토착공동체)로부터 PIC을 획득하고, ②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한 후, ③ 관할 책임 기관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비상업적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바 주에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① 자원제공자(토착공동체)로부터 PIC을 획득하고, ② 관할 책임기관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법정신고서 제출 및 접근허가서, 전문가비자 발급은 사바 주 현지에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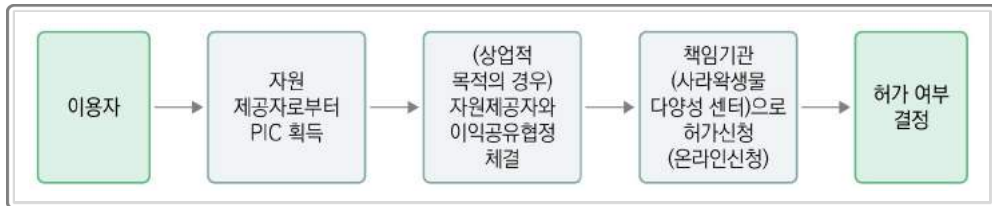
표 7. 사바법의 허가신청 개요



• 사라왁 주 ABS

- 상업적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① 자원제공자(토착공동체)로부터 PIC을 획득하고, ②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한 후, ③ 관할 책임기관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 비상업적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에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① 자원제공자(토착공동체)로부터 PIC을 획득하고, ② 관할 책임기관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

표 8. 사라왁 주 허가 신청 개요



제 3 절

연방 ABS법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제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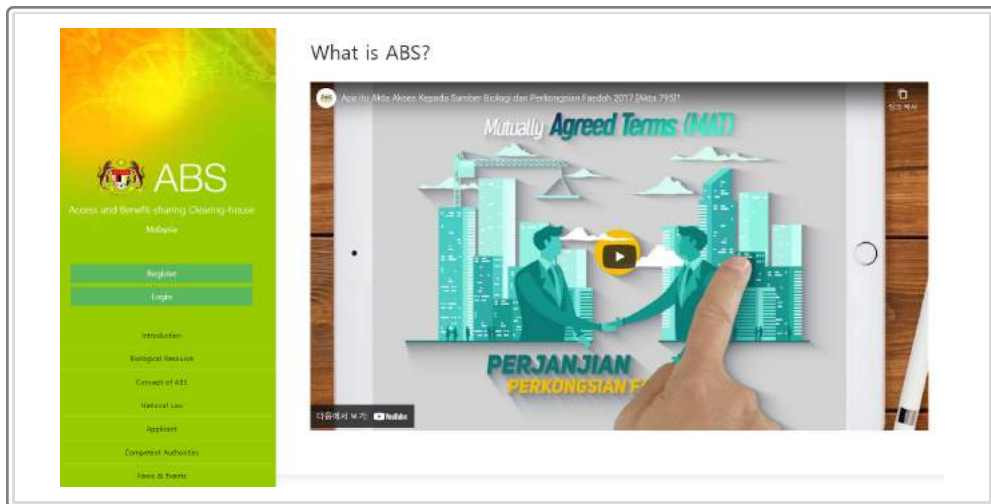
연방 ABS법의 생물자원 접근절차 및 이익공유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1) 웹사이트 접속 및 등록

-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가능함
 - 웹사이트 주소: <https://www.myabs.gov.my/>
 - 웹사이트 첫 화면은 다음과 같음

그림 1. 웹사이트 첫 화면



- 웹페이지 첫 화면의 'Register'를 클릭하여 먼저 등록절차를 밟아야 함
 - 다음의 등록화면에 있는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국적 등)를 입력하고 입력한 이메일을 통해 인증하면 해당 웹사이트에 등록됨

그림 2. 웹사이트 등록 화면

2) 로그인 후 프로필 작성

- 등록이 완료된 후,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이 프로필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곳에 사진, 이력서, 비자번호, 소속 등을 업로드 및 입력함

그림 3. 로그인 화면

- 프로필 작성을 마친 후, 허가(Permit)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신청(Permit Application) 화면이 나오는데, 신규신청의 경우, 'Apply New Permit' 버튼을 누르고, 약관(Terms and Conditions)에 동의함

그림 4. 허가신청 첫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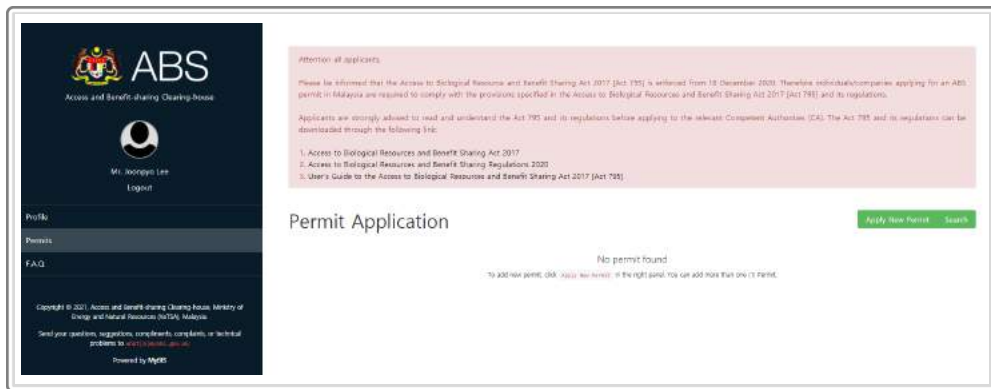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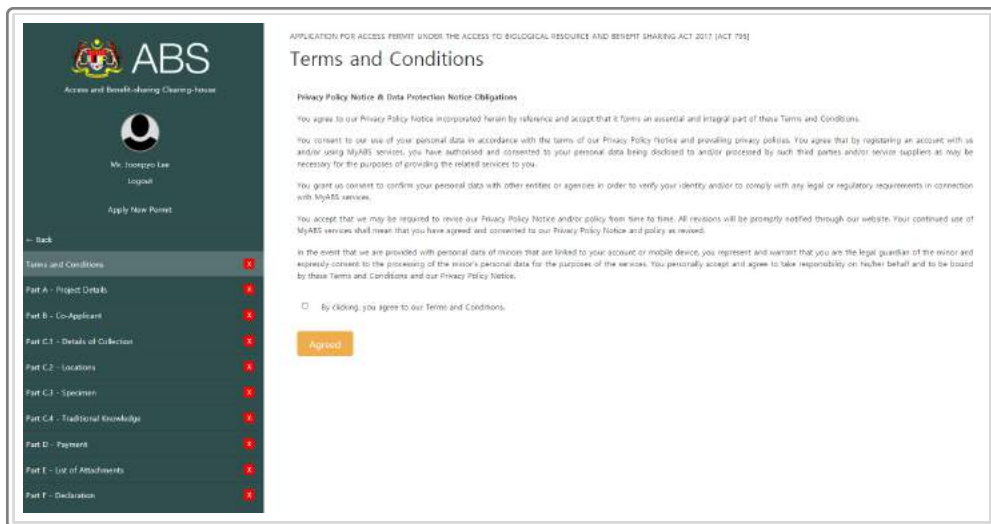


그림 5. 거래약관 동의 화면



3) 허가절차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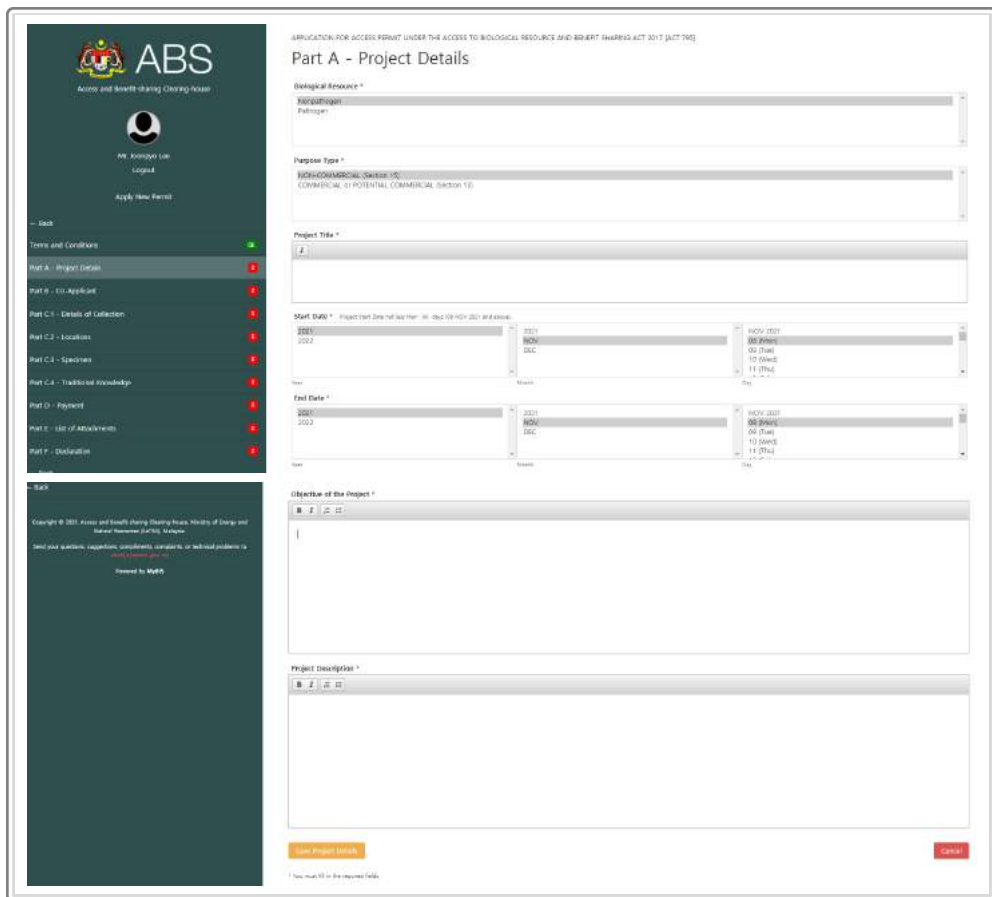
- 약관 동의 후, 화면상 Part A 부터 Part F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입력해야 하여 허가절차를 진행함

① 먼저, Part A(Project Details)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허가를 위한 참조번호가 부여됨

* Part A(Project Details)에서 입력해야 할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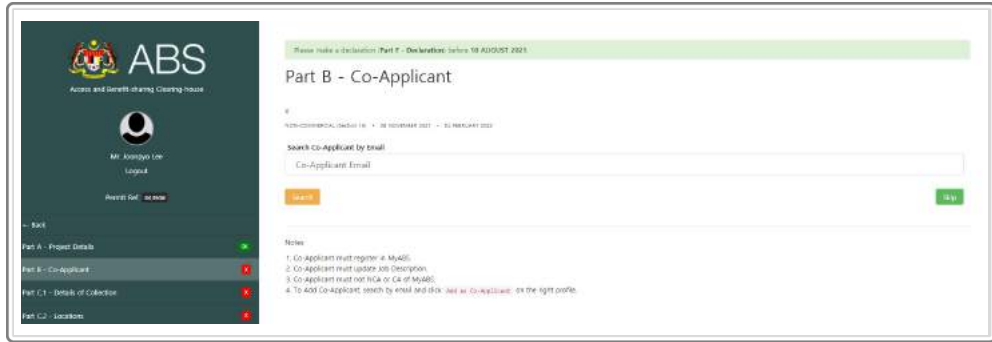
- ① 생물자원(Biological Resource): 병원체(pathogen)인지 비병원체(nonpathogen) 여부 선택
- ② 목적유형(Purpose Type): (잠재적) 상업적 목적인지 비상업적 목적인지 여부 선택
- ③ 연구기간(Date): 시작일과 종료일 입력
- ④ 연구목표(Objective)
- ⑤ 연구내용 상세(Description)

그림 6. Part A(Project Details) 1



② Part B(Co-Applicant)에서는 공동(협력)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함

그림 7. Part B(Co-Applicant)



③ Part C1(Details of Collection)에서는 수집할 유전자원의 양과 부피(Volume / Quantity), 취득 방법(How is the collection to be undertaken), 분석방법(How is the collection to be analyse) 및 Proposed location(s) of the deposition of duplicate sample(s)을 입력함

그림 8. Part C1(Details of Collection)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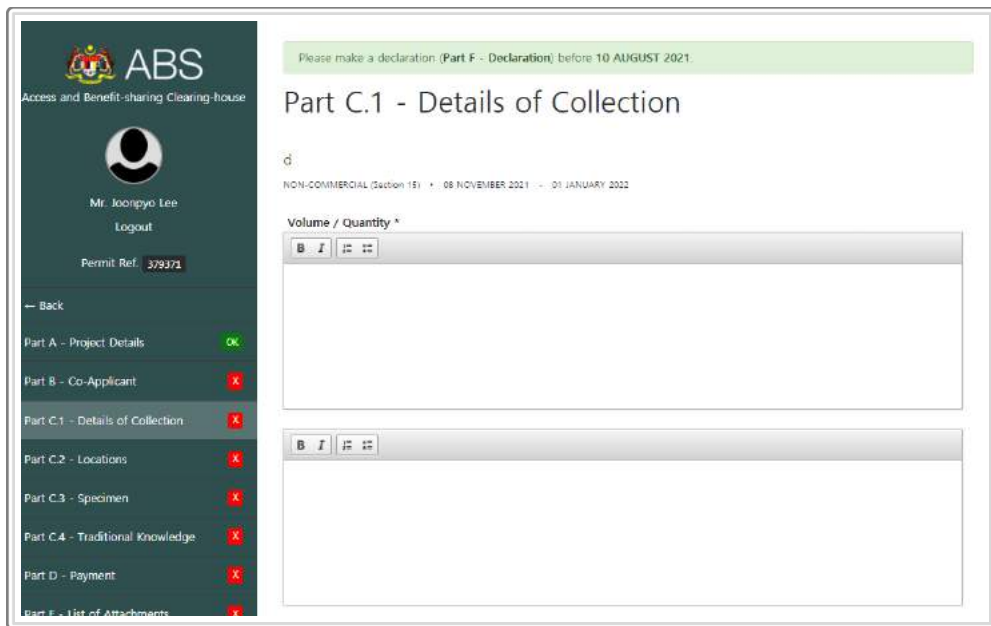


그림 9. Part C1(Details of Collection) 2

④ Part C2(Locations)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장소를 입력함

그림 10. Part C2(Locations)

⑤ Part C3(Specimen)에서는 유전자원 종의 이름을 입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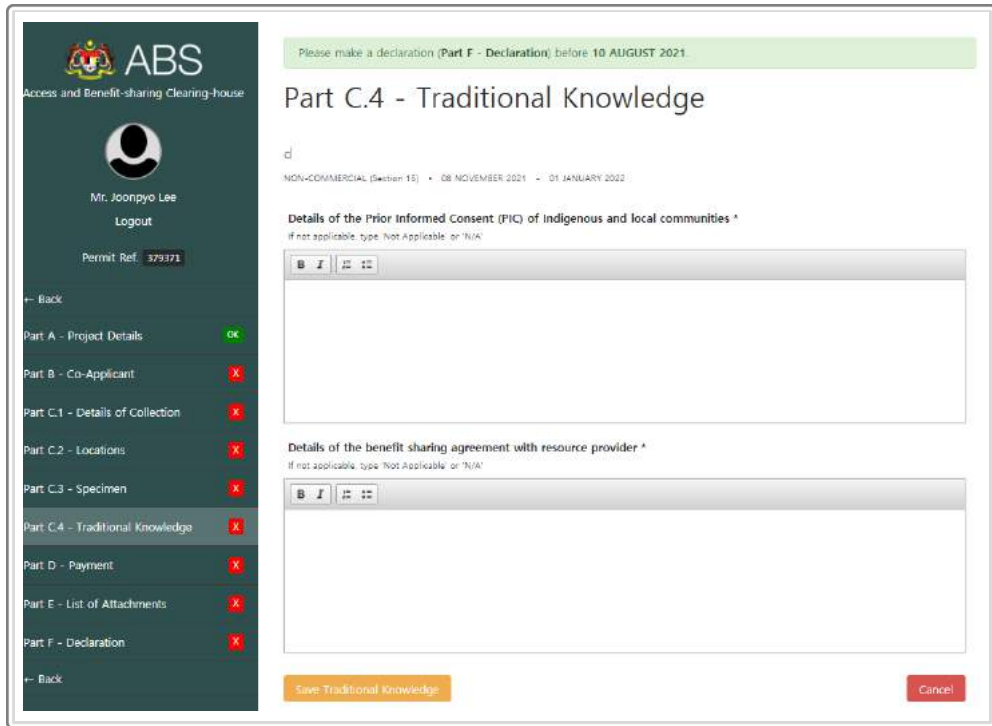
그림 11. Part C3(Specimen)

The screenshot displays the ABS web interface. On the left is a dark sidebar with the ABS logo and user information for Mr. Joongpyo Lee (Permit Ref: 379371). The sidebar lists navigation options: Part A - Project Details (OK), Part B - Co-Applicant (X), Part C.1 - Details of Collection (X), Part C.2 - Locations (X), Part C.3 - Specimen (X), Part C.4 - Traditional Knowledge (X), Part D - Payment (X), Part E - List of Attachments (X), and Part F - Declaration (X). The main content area has a green banner at the top: "Please make a declaration (Part F - Declaration) before 10 AUGUST 2021." Below this is the title "Part C.3 - Specimen" and a sub-section "Search species" with a text input field containing "Taxonomy, Scientific Name, or Common Name". There are "Search" and "Cancel" buttons. A "Notes" section contains the text: "1. Search species by Taxonomy, Scientific name, or Common Name."

⑥ Part C4(Traditional Knowledge)에서는 전통지식 관련, 토착공동체의 PIC(Details of the Prior Informed Consent (PIC) of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및 이익공유협정 관련 상세 내용(Details of the benefit sharing agreement with resource provider)을 각각 입력함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Not Applicable' 또는 'N/A'으로 표시함

그림 12. Part C4(Traditional Knowledge)



4) 수수료 납입

- Part D(Payment)에서는 ABS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Part C2에서 입력한 위치와 연계되어 자동으로 계산됨

그림 13. Part D(Payment)

The screenshot displays the ABS web portal interface. On the left is a dark sidebar with the ABS logo and user information for Mr. Joongyo Le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Part D - Payment' and featur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data:

No	Status	ABS Fee	Total	Method
1	Unpaid	Sarawak CA	US\$ 100.00	Upload Receipt

Below the table, there is a green button labeled 'Next: Part E - List of Attachments'. A 'Notes' section contains the following text: '1. Only a single fee is required for one permit application on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 located in the Federal territories areas which covers Kuala Lumpur, Labuan, and Putrajaya. The CA for the Federal territories is Kementerian Wilayah Persekutuan (KWP).'

5) 제출서류 첨부

- Part E(List of Attachments)에서는 제출서류를 첨부해야 함
- 제출서류에는 추천서, 협력연구제안서, 기업등록증, 생물자원 수집 상세, 종 목록, 허가신청 위치, 위치지도, 금전적 이익공유협정, 연구제안서, 납입영수증, 참고문헌 등이 있음
- JPG, JPEG, Adobe PDF로만 업로드 가능, 2MB 이하이어야 함

그림 14. Part E(List of Attachments)

The screenshot displays the ABS web portal interface. On the left is a dark sidebar with the ABS logo and user information for Mr. Joonpyo Le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Part E - List of Attachments'. At the top, a green banner reads 'Please make a declaration (Part F - Declaration) before 10 AUGUST 2021.'. Below this, there's a 'Select file' button with a tooltip that says '파일 선택 | 선택된 파일 없음'. A 'Notes' section lists requirements: 'File format must in JPG, JPEG or Adobe PDF only' and 'File size must not more than 2 MB or 2000 KB.'. A 'Type' dropdown menu is open, showing options like 'Authorization Letter', 'Co-Applicant Offer Letter', 'Company Registration Certificates', etc. Below the dropdown are input fields for 'Title' and 'Description'. At the bottom, there are 'Save Attachment' and 'Cancel' buttons, and a note: '* You must fill in the required fields.'

6) 최종 확인 후 신청완료

- Part F(Declaration)에서는 모든 양식의 내용이 입력된 경우, 마지막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고, 확인 후 신청이 완료됨

그림 15. Part F(Declaration)

The screenshot displays the 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house) interface for the Part F - Declaration stage. The sidebar on the left shows the progress of various parts: Part A (Project Details) is complete (OK), while Parts B through F are incomplete (marked with a red X).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green banner with a deadline: "Please make a declaration (Part F - Declaration) before 10 AUGUST 2021." Below this, the user's name "Mr. Joonpyo Lee" and permit reference "379371" are shown. The declaration form consists of several input fields, each with a red border, corresponding to the following items: "Update your latest Passport No.", "Upload your latest profile photo.", "Upload your latest resume.", "Upload your latest passport.", "Part B - Co-Applicant.", "Part C.1 - Details of Collection.", "Part C.3 - Specimen.", "Part C.4 - Traditional Knowledge.", "Part D - Payment.", and "Part E - List of Attachments."

II 연방 ABS법의 상세 내용

1. 접근허가 대상과 활동

- 말레이시아 연방 ABS법은 접근허가 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ABS 가이드라인 (2021)¹⁾에 따르면,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허가 대상자에 해당
- 말레이시아 연방 ABS법상 접근허가 대상 활동은 다음과 같음(법 제5조 1항)
 - 생물자원의 자연적 서식지나 발견된 곳(시장 포함)에서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생물자원을 취득 하는(taking) 것; 또는
 - 취득된 생물자원이 연구개발(R&D) 대상이 될 것이라고 책임기관이 결정한 경우
- 접근에 해당되지 않거나 예외로서 접근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접근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법 제5조 2항)
 - 상업적, 여가 또는 게임 목적의 어업
 - 식용 목적으로 동식물 취득
 - 연구개발(R&D) 이외 목적으로 재배된 생물자원의 취득
 - 연구개발(R&D) 이외 목적으로 자연적으로 생산된 기름과 꿀 등의 취득
 - 번식 목적의 식물 번식 물질(plant reproductive material) 수집
 - 경제임업(commercial forestry) 수행
 -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community and local community: ILC)가 전통과 관행 상 생물자원을 사용하거나 교환
 - 2007년 '바이오안전성법(Biosafety Act)' 상의 유전자변형체(LMOs)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인정되고 유효한 사람으로부터 생물자원을 취득

1) User's Guide to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7 [Act 795] (2021)

- 2004년 ‘신품종식물보호법(Protection of New Plant Varieties Act)’에 따라 식물변종에 대한 재배자로 인정되고 유효한 사람으로부터 생물자원 취득
- 연방 ABS법 60조에 따라 면제된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 * 동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을 통해 표본으로 확보된 자원의 경우
 - * 생물자원을 보유한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이 서명으로 요청한 경우
 - * 동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대한 교류 및 이용에 관한 기존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 말레이시아 공공기관의 비상업적 연구 및 교환(법 제18조)
 - 말레이시아 내 공공교육기관(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자가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토착민과 지역공동체가 규정한 조건이나 사전통고승인을 통해서 접근한 경우
 - 책임기관이 달리 정하거나 정해진 조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비영리적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내 공공교육기관(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사람들 간 또는 말레이시아 내 그러한 기관이나 부처 간 생물자원을 교환하는 경우
 - 비상업적 목적 생물자원 허가증 보유자로부터 생물자원에 접근하려고 하는 말레이시아 국내외 개인이나 기관이나 말레이시아의 국립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정부기관이나 이들 기관에 소속된 개인이 허가증 보유자 또는 개인이나 기관의 요청에 따라, 비상업적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계속하려는 경우
- 기타 예외사항: 소농의 권리(법 제6조)
 - 농민이 저장한 종자 또는 번식물질의 저장, 사용, 교환 및 판매
 - 농업, 원예, 양계, 낙농, 축산 또는 양봉에 사용되는 관습적 사육 또는 전통적 관행

2. 접근절차

1) 개요

- 생물자원/전통지식 이용자(신청자)는 자원제공자로부터 사전통고승인(PIC)을 획득하고, 상업적 목적의 경우 상호합의조건(MAT)을 체결함

- 이용자는 책임기관에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신청함
- 책임기관은 접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이용자와 연락기관으로 통보함
 - 책임기관이 연락기관으로 통보 시, 허가증 사본을 포함한 허가 관련 정보를 전달하면, 연락기관은 이러한 정보를 정보공유소(CHM)로 전달하여 공개함
- 이용자는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이익이 발생 시에는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협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고,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특허출원 시 이를 연락기관으로 통보함

2) 이용자의 접근허가증 신청

- 상업적/잠재적인 상업적(이하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으로 허가증을 신청 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려는 자는 관할 책임기관으로 허가를 신청함(법 제12조 1항, 제15조 1항)
- 제출 서류
 - (잠재적) 상업적 목적
 - 접근할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이 토착공동체에 속하는 경우, 토착공동체의 PIC (지정 양식, 인증사본)
 - 자원제공자와 신청자 사이의 이익공유 협정 인증사본
 -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인 경우 공인 법정 양식의 법정신고서 원본
 - 선서기관장이 적법하게 확정된 신청인 및 소정의 서식에 따른 신청내용 확인원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여권 인증사본
 - 신청자가 기업일 경우, 정관 등의 형태의 MoA 인증사본
 - 기타 관계당국이 요구하는 문서
 - 비상업적 목적
 - 접근할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이 토착공동체에 속하는 경우, 토착공동체의 PIC (지정 양식, 인증사본)
 -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인 경우 공인 법정 양식의 법정신고서 원본
 - 선서기관장이 적법하게 확정된 신청인 및 소정의 서식에 따른 신청내용 확인원서

-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신분증/여권 인증사본
- 신청자가 기업일 경우, 정관 등의 형태의 MoA 인증사본
- 현지 협력자(현지 공공 고등교육기관,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의 추천서
- 기타 관계당국이 요구하는 문서

○ 비상업적 목적으로 신청 시, 특이사항

- 말레이시아 국립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정부기관과 협력 의무(법 제15조 2항)
 - 예외의 경우
 - * 신청자가 말레이시아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인 경우
 - * 현지 지역연구자가 접근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우
 - * 접근 관련 활동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우
- 『법정신고서』를 함께 제출(법 제15조 1항 및 별표2)

표 9.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2020)상 수수료

조 문	신청 목적	수수료
제12조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의 생물자원 접근	현지 신청자: RM500 외국인 신청자: US\$500
제15조	비상업적 목적의 생물자원 접근	현지 신청자: RM100 외국인 신청자: US\$100

3. 책임기관 접근허가

1) 접근 허가요건

- 관할 책임기관은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을 충족 시, 접근신청을 허가함
 - 상업적 목적 허가요건(법 제12조 2항)
 - 법 제22조에 따라 이익공유협정 체결

- 토착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소유의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시, 법 제23조에 따라 PIC을 획득;
- 멸종위기 분류군(threatened taxa)에 대한 접근이 아닌 경우;
- 특산종(고유종), 희귀종, 또는 연방/주법 상 보호되는 종이 아닌 경우;
- 접근이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종교적, 전통적 또는 기타 관습적 관행을 포함한 생활과 문화적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인간 유전자원에 접근 시, 윤리적 가치 또는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경우;
- 접근으로 인해 통제하거나 경감하기 어려운 정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접근이 유전적 손실 또는 생태계의 기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접근이 식량안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생물자원의 이용이 국가 또는 주 이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 생물자원의 이용이 생화학 무기의 개발 또는 군사적/테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생물자원이 유전적 사용 제한 기술(genetic use restriction technology)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가 동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가 파산하거나, 회사의 경우, 폐업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동 법 또는 다른 법규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 및
- 생물자원의 이용이 말레이시아가 당사국인 관련 국제협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
- 비상업적 목적 허가요건(법 제15조 3항)
 -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토착공동체 또는 지역공동체 소유의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접근 시, 법 제23조에 따라 PIC을 획득;
 - 멸종위기 분류군(threatened taxa)에 대한 접근이 아닌 경우;
 - 특산종(고유종), 희귀종, 또는 연방/주법 상 보호되는 종이 아닌 경우;
 - 접근이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종교적, 전통적 또는 기타 관습적 관행을 포함한 생활과 문화적 관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인간 유전자원에 접근 시, 윤리적 가치 또는 공공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경우;
- 접근으로 인해 통제하거나 경감하기 어려운 정도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접근이 유전적 손실 또는 생태계의 기능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접근이 식량안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생물자원의 이용이 국가 또는 주 이익에 반하는 목적이 아닌 경우;
- 생물자원의 이용이 생화학 무기의 개발 또는 군사적/테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생물자원이 유전적 사용 제한 기술(genetic use restriction technology)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가 동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 신청자가 파산하거나, 회사의 경우, 폐업하지 않은 경우;
- 신청자가 동 법 또는 다른 법규의 요건을 준수한 경우; 및
- 생물자원의 이용이 말레이시아가 당사국인 관련 국제협정에 반하지 않는 경우

2) 접근불허 사유

- 위의 허가요건(법 제12조 2항, 제15조 3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법 제12조 3항a, 제15조 4항a)
- 책임기관이 연방기관과 협의하여, 신청자가 연방 ABS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생물자원이용 시 PIC에 따라 접근하고 MAT을 확립하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규제하지 않는 관할권(국가) 출신인 경우(법 제12조 3항b, 제15조 4항b)
-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기관은 예외적으로 허가증 발급 가능함
 - 멸종위기종이 아닌 경우와 특산종/희귀종/연방 또는 주법 상 보호되는 종이 아닌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음(법 제12조 4항, 제15조 5항)

3) 접근허가증 발급

- 책임기관은, 접근신청의 접근요건을 충족하고 시, 조건 없이 또는 조건을 부여하여 신청을 승인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사유를 명시하여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법 제12조 5항, 제15조 6항)

4. 허가증 발급절차

1) 허가증 발급

○ 허가증 발급

- 책임기관은 신청자의 허가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연락기관이 책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 함(법 제13조 1항, 제16조)

○ 책임기관의 결정 통보

- 책임기관은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접근허가 신청 결과에 대한 결과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연락기관으로 통보함(법 제17조)

○ 허가증에 포함된 정보

- 책임기관은 허가증이 발급되면 그 사본을 연락기관으로 전달해야 하며(법 제24조 1항), 허가증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을 증빙함 (법 제24조 2항):
 - a. 생물자원 접근에 대한 책임기관의 PIC;
 - b.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 접근에 대한 ILCs의 PIC;
 - c. 접근된 생물자원의 출처(origin);
 - d.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협정 체결;
 - e. 허가증 발급 받은 자;
 - f. 허가증이 발급된 용도

2) 허가증 발급 이후 조치

○ 생물자원 이용 목적의 변경

- 허가증에 명시된 생물자원 이용 목적의 변경은 금지되며, 이용 목적의 변경은 새로운 신청절차를 통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법 제13조 2항, 제16조 2항)

○ 허가조건 변경 또는 철회

- 책임기관은 허가증을 발급한 이후에도 필요시 추가조건을 부과하거나 허가서에 부과된 조건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음(법 제13조 3항, 제16조 3항)
- 이 경우 책임기관은 허가증 보유자에게 서면통보하고, 보유자에게 통보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서면 진술(written representations)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법 제13조 4항, 제16조 4항)
- 통보서에 명시된 기한이 만료하고 허가증 보유자의 서면진술서를 고려한 후에, 책임기관은 새로운 요건을 부과/변경/철회할지 여부를 결정(법 제13조 5항, 제16조 5항)
- 책임기관이 결정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허가증 보유자에게 서면통보해야 하고 서면통보서에 유효일자를 명시해야 함(법 제13조 6항, 제16조 6항)

○ 상업적 목적으로 허가증 양도 금지

- 허가증 보유자는 허가증을 양도하거나 허가증에 적힌 권리나 의무사항을 제3자에게 증여금지(법 제14조 1항)

3) 허가증 보유자의 의무사항

○ 허가증 보유자의 기록보관 의무

- 허가증 보유자(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 접근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함(법 제26조 1항):
 -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설명(고유 식별자(unique identifier) 포함);
 - 접근 일자;
 - 접근 장소;
 - 생물자원 물량 또는 크기;
 - 생물자원의 통칭 및 학명;
 - 생물자원이 보관된 위치;
 - 생물자원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세부사항(생물자원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포함)

- 이러한 기록 사본은, 생물자원을 획득하고 30일 이내 또는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이 정한 각각의 일자 내에,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으로 제공함(법 제26조 2항)
 - 허가증 보유자는 기록을 소유기간 및 사용 종료 후 20년간 보관함(법 제26조 3항)
- 허가증 보유자의 생물자원 처분
- 허가증 보유자가,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생물자원을 책임기관에 제공해야 함(법 제27조 1항)
 - 그러나 책임기관이 생물자원 수탁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허가증 보유자는 책임기관이 정한 방식으로 생물자원을 처분하고 책임기관에 즉각 보고해야 함(법 제27조 2항)

5. 금지사항

1) 생물자원/ 연구결과 이전금지

- 생물자원 또는 연구결과의 외국인에게 이전 금지
 - 말레이시아의 국립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정부기관의 개인 또는 기관은, 책임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에게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 또는 연구결과를 이전해서는 안됨(법 제19조 1항)
- 양수인의 허가신청
 - 책임기관이 이전을 승인한 경우,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이전되어야 하고 양수인은 동법에 따라 별도로 허가를 신청해야 함(법 제19조 2항)

2) 비상업적 목적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 금지

- 비상업적 목적으로 허가증을 발급받은 자,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공공연구기관/정부기관의 개인 또는 기관, 및 생물자원/연구결과의 양수인은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개발

을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됨(법 제20조)

- 예외: 법 제13조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법 제22조에 따라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한 경우

3)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제3자 제공 금지

- 중개인이 아닌 자 또는 생물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제3자(허가가 필요한 자)에게, 이러한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을 공급, 판매, 판매를 위한 광고, 또는 이익을 얻기 위해 제공하는 것은 동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함(법 제21조 1항)

6. 이익공유

1) 생물자원/전통지식 이익공유

-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에 접근허가 신청자는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협정 (benefi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해야 함(법 제22조 1항)
 - 이익공유협정은 상호합의조건(MAT: mutually agreed terms)에 근거해야 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익공유해야 함(법 제22조 2항)
 - 자원제공자: 연방정부, 주 당국(State Authority), 정부부처, 정부기관,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및 개인 등이 해당(법 제4조)
- 연방정부나 주 당국이 자원제공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방정부나 주 당국은 신청자에게 이익공유협정에서 정해진 금전적 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법 제22조 3항)
 - 이러한 금전적 이익은 주정부나 연방정부가 설치한 기금에 기탁(법 제22조 4항)
 - 책임기관은 이러한 기금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사용해야 함(법 제22조 5항)

이익공유협정 상세 내용(시행규칙 제9조)

- 당사자 상세(자원이용자가 개인인 경우, 이름/여권번호/주소, 기관인 경우, 기관명/등록번호/주소)
- 수집 장소에 대한 출입 시간 및 빈도에 관한 세부 사항
- 수집 할 생물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포함한 생물자원에 대한 설명
- 활동의 지리적 / 생태학적 영역
- 방법을 포함하여 접근할 전통지식에 대한 설명
- 접근 목적 ((잠재적)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의 의도된 사용 (있는 경우)
- 생물자원의 가능한 사용에 대한 모든 제약
- 사용 변경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
- 데이터 및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권
- 금전적 및 비금전적 이익 공유
-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 사항
- 지식재산권 관련 조건
-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재협상 및 검토 조항
- 제3자 조항 : 생물자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지역 및 원주민공동체의 지식 및 관행을 존중, 보존 및 유지해야 할 의무
- 전통적인 관행에 따라 생물자원의 관행적인 이용을 보호하고 장려할 의무
- 계약 해지 조항
- 기밀 정보의 취급
- 생물자원의 및 그 제품 (샘플 포함)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공유에 관한 조항
- 계약 위반에 대한 결과;
- 주소, 전화 번호, 팩스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기관의 연락처 정보
- 기관 내 연락담당자 이름(신분 증명서류 및 기관 내 임명장 사본)
- 자원 이용자가 아닌 경우 생물자원 수신자의 연락처 세부 정보
- 계약 기간
- 예상되는 연구개발(R&D) 기간

금전적 이익의 상세 내용(시행령 제9조)

- 접근 요금/ 수집 또는 기타 획득 샘플 당 요금
- 선불 결제
- 마일스톤 지불
- 로열티 지급
- 연구 자금
- 벤처 캐피탈 펀딩
- 라이선스 수수료
- 급여 지급
- 고정 수수료

비금전적 이익의 상세 내용(시행령 제9조)

- 연구 데이터 및 수집, 개발된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연구개발(R&D) 결과 공유
- 접근 활동이나 제품 개발 또는 고용 기회에 참여
- 협력 및 기여
- 공정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하에 생물자원 및 / 또는 지식의 합의된 이전
- 기술 이전
-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 음식 및 생계 보장 혜택
- 교육 및 역량 강화
- 자원 원산지 인정, 전통지식 인정 및 홍보
-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정 및 / 또는 공동 소유권
- 출판물의 공동 저자

2) 토착지역공동체의 생물자원/전통지식 이익공유

- 다음의 자원에 접근 시, 토착공동체 및 지역공동체(ILC)의 사전통고승인(PIC)을 획득해야 하고(법 제23조 1항),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관련 공동체와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함(법 제23조 3항)
 -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ILCs)가 법적으로 확립된 권리를 보유한 토지 내 생물자원; 및
 - 토착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보유한 관련 전통지식
- 토착공동체 및 지역공동체의 PIC은 이들 공동체의 관습법과 관행, 규약과 절차에 따라 획득함(법 제23조 2항)
- PIC 획득 및 이익공유협정 체결 대상자(법 제23조 4항)
 - 관련 공동체의 관습법과 관행, 규약과 절차에서 지정된 대표자, 기구 또는 기관;
 -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대표자 또는 기관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체 내에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유한 자; 또는
 - 이러한 전통지식 보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나 주 당국

* 이 경우 이익공유협정 체결로 얻은 금전적 이익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설치한 기금에 기탁되고, 비금전적 혜택을 포함한 모든 혜택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법 제23조 5항)

- 동일한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1개 이상의 ILCs와 공유되는 경우(법 제23조 6항)
 - 신청자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모든 보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기구를 통해 PIC 획득과 MAT 체결
 - 모든 보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책임기관이 허가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보유자의 대표자 또는 기구를 통해 PIC 획득 및 MAT 체결

- 신청 승인 이후에 특정 ILCs가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정당한 보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책임기관은 이하를 결정함
 - PIC을 승인하고 MAT를 체결한 ILCs와 협의 하에 이러한 주장을 결정(법 제23조 7항a) 이러한 주장이 증명된 경우, 책임기관은 해당 ILCs에게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선언(법 제23조 7항b)
 - 모든 관련 ILCs와 협의 하에, 해당 ILC에게 부여된 이익의 성격을 결정(법 제23조 7항c)

7. 처벌규정

표 10. 개인/법인의 법 위반 처벌조치

위반사항	대상자		처벌내용
허가증 없이/허가증 조건을 위반하여 접근	상업	개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법인	5,0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비상업	개인	1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법인	1,0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이용목적/허가조건 변경금지 의무위반	상업	개인	2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법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비상업	개인	1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법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위반사항	대상자	처벌내용
생물자원/전통지식 미보유자가 제3자(비허가자)에게 공급, 판매, 광고/이익 목적으로 제공 금지 위반	개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 징역형 모두 부과
	법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허가철회시, 허가증보유자에게 공급 판매, 광고/이익 목적으로 제공금지 위반	개인	2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 과 징역형 모두 부과; 유죄판결 이후에도 계속 위반 시에는 1일에 5,000 링깃 이하의 추가 벌금
	법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처벌; 계속 위반 시 1일에 10,000링깃 이하의 추가벌금
특허출원시 연락기관으로 통보의무 위반	개인	1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법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제공정보의 오류	개인	5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법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허가증/인증서, 등록증 변경, 위조, 훼손 또는 손상	개인	1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부과
	법인	500,000링깃 이하의 벌금형

○ 회사의 법 위반에 대한 회사 책임자의 책임

- 회사가 법 위반 시, 회사 책임자도 별도로 또는 공동으로 개인에 적용되는 처벌을 부과함(법 제54조)
 - 예외: 책임자가 위법행위를 인지, 동의 또는 묵인하지 않았고,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 경우

○ 협력자 또는 중개인의 법 위반에 대한 개인의 책임

- 협력자 또는 중개인의 작위(act), 무작위(omission), 태만(neglect), 또는 불이행(default)에 대해서, 신청자 개인도 처벌함(법 제55조)
 - 예외: 개인이 위법행위를 인지, 동의 또는 묵인하지 않았고, 작위, 무작위, 태만,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한 경우

제 4 절

사바 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제4절

사바 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1. 개요

1) 접근 신청절차

(1) 학술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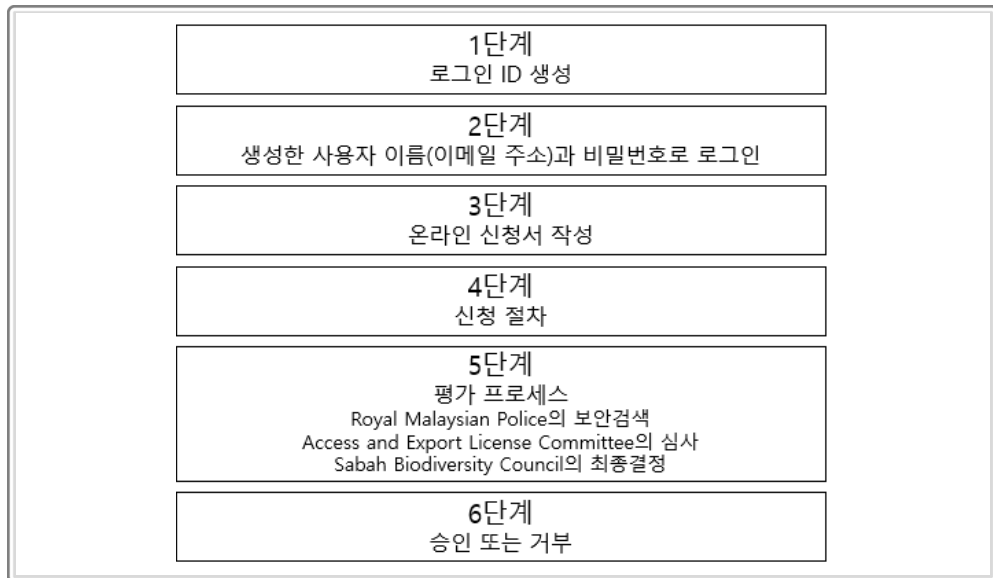


(2) 상업적 목적



2) 반출 신청 절차

(1) 학술 목적



(2) 상업적 목적



2. 세부 절차

1) 웹사이트 접속

- 외국인이 사바 주 생물자원에 접근/반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https://sabcapps.sabah.gov.my/>)에 접속하여 Sabah Biodiversity Access & Export License Online Application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그림 16. Sabah Biodiversity Access & Export Licence Online Application 웹사이트 화면



2) 계정 만들기

- 신규 이용자는 먼저 로그인을 위한 계정을 만들어야 함
-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CREATE ID를 클릭하여 ID(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설정

그림 17. 계정 만들기 화면



- 비밀번호는 8자 이상이어야 하며 소문자 1개, 대문자 1개, 숫자 1개를 포함해야 함
- 계정이 만들어지면 추후 갱신 및 반출 신청 등의 절차 이용시에도 사용이 가능

그림 18. ID(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입력 화면

The screenshot shows a registration form for the Sabah Biodiversity Access & Export Licence Online Application. The form is titled "Sabah Biodiversity Access & Export Licence Online Application" and features the SaBC logo. It includes the following fields and instructions:

- Email:** A text input field labeled "Email". Below it, a note states: "To ensure uninterrupted correspondence from us, please add `sabc@sabah.gov.my` to your email's safe senders list."
- Password:** A text input field labeled "Password".
- Re-enter Password:** A text input field labeled "Re-enter Password".
- Below the password fields, a note states: "Password must be at least 8 characters and must contain at least one lower case letter, one upper case letter and one digit."
- At the bottom left, there is a "Cancel" button.
- At the bottom right, there is a blue "Register" button.

3) 로그인

- 웹사이트 첫 화면에 있는 LOGIN을 클릭하여 생성된 ID(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함

그림 19. 로그인 화면



- 로그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을 통해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음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신청 지원	Ken Kartina Khamis	+6088 369080	sabc@sabah.gov.my
기술 지원	HIERWAN @ MOHD IKRAM BIN MURSHID		Hierwan.Murshid@sabah.gov.my
기술 지원	DK.NURSAFINAH AK.MOH SAID		Nursafinah.Akmsaid@sabah.gov.m

4) 정보 입력

- 로그인 후 연구 제안을 포함하여 신청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 입력해야 할 구체적인 신청 정보 내용은 '사바주 접근신청 서식'(부록9)과 '사바주 물질반출신고서 서식'(부록 10)을 참조할 것

5) 서류 제출

○ 업로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생물자원 접근의 경우

- 접근허가 신청서(온라인)
- 여권 또는 말레이시아 신분증(MyKad) 사본
- 사바 연구를 위한 말레이시아 기관의 추천서
- 말레이시아 현지 협력 상대방의 서한
- 연구 후원기관의 추천서
- 접근이 이루어질 지역의 자원관리자(자원제공자)의 허가서
- 연구제안서 사본

② 생물자원 반출의 경우

- 반출허가신청서(온라인)
- 여권 사본
- 이 연구에 협력할 말레이시아 기관의 추천서(사바에서 생물자원 반출의 필요성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말레이시아 현지 협력 상대방의 서한

6) 신청완료

- 모든 정보가 입력되고 관련 문서가 첨부되어야 신청처리가 완료됨
- 상태표시에 <Application Complete(신청완료)>라고 표시되는 경우 신청절차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의미이므로 평가절차를 기다리면 됨. 그러나 <Application Incomplete(신청미완료)>라고 표시되는 경우, 정보나 문서가 정상처리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메일을 통해 Sabah Biodiversity Centre가 요구하는 정보나 문서를 추가 제공해주어야 함

7) 신청결과 통보 후 법정신고서 등 제출

- SaBC는 심사를 거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접근허가 승인 시, 신청자는 법정신고서(SD: Statutory Declaration)를 SaBC에 제출 후 접근허가서를 발급받고, 전문가방문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발급이 필요함

표 11. Professional Visit Pass 신청 시 제출서류

신규신청자 체크리스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M.12 Form (전문가방문비자 신청서식) 2. HIF. 11 Form (보증채권) 3. IMM.63 Form (이민국 참조 서식 - 4부) 4. IMM.47 Form (비자신청서식 - 여행비자, 필요시) 5. 여행비자에 신청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연구자의 지원 서한 (필요시) 6. 전문가방문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연구자의 지원 서한 (최근) 7. 여권 사본 1장 (앞장과 유효기간) 8. 여권의 입국비자와 소인 있는 면 사본 1장 9. 사바생물다양성이사회 접근허가서 사본 1장 (최근) 10. 여권사진 4장 11. 지역공동연구자 신분증(MyKad) 사본 1장 12. 보증인의 신분증(MyKad) 사본 1장 (보증인이 지역공동연구자가 아닌 경우)
연장신청자 체크리스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IMM.55 Form (비자 연장신청서 - 2부) 2. HIF. 11 Form (보증채권) 3. IMM.47 Form (비자신청서식 - 여행비자, 필요시) 4. 전문가방문비자 연장 신청하기 위해서, 지역공동연구자의 지원 서한 (최근) 5. 여권 사본 1장 (앞장과 유효기간) 6. 여권의 입국비자와 소인 있는 면 사본 1장 7. 이전의 전문가방문비자 사본 1장 8. 사바생물다양성이사회 접근허가서 사본 1장 (최근) 9. 지역공동연구자 신분증(MyKad) 사본 1장 10. 보증인의 신분증(MyKad) 사본 1장 (보증인이 지역공동연구자가 아닌 경우)

출처: <https://sabc.sabah.gov.my/sites/default/files/uploads/download/2019-11/immigration-checklist.pdf>

II 사바 주 법의 상세 내용

1. 접근허가 대상

- 허가대상자: 내국인 및 외국인 (개인, 단체, 교육/연구기관, 기업)
- 허가 대상자원: 사바주 내의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 다음의 지역에서 발견된 생물자원 또는 전통지식(사바법 제16조):
 - a. 주(State) 토지
 - b. 양도된 토지
 - c. 보호구역, 토착민이 관습적으로 소유한 토지, 또는 토착지역공동체(native and local community: NLC)가 공동체/관습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 d. 강, 지류, 수로, 해양공원 또는 주(State) 영해 등 모든 지역과 주(State) 현지의 컬렉션(ex situ collection) 포함
- 허가 대상활동: 연구개발 목적으로 접근 또는 반출하는 경우

2. 사전 필수 요건

- 토착지역공동체의 PIC 획득 의무
 - 이하의 자원에 대해 접근 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PIC) 획득 의무 (사바법 24B(1)조, 24B(2)조)
 - a. 토착지역공동체가 법률 상 권리를 보유한 토지에 포함된 생물자원
 - b. 토착지역공동체가 보유한 관련 전통지식
 - c. 이러한 PIC은 토착지역공동체의 관습법(customary law)과 관행(practice), 규약(protocol)과 절차(procedure)에 따라 획득

○ 이익공유협약 체결 의무

-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신청 이전에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협약 체결 의무 (사바법 16(2)조, 24(A)조)
- 자원제공자가 토착지역공동체인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와 이익공유협약 체결 (사바법 23B(3)조)

3. 허가서 발급 이후 절차(도착 가이드라인)

1) 법정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

- 코타키나발루에 도착하면, 신청자(및 신청자 그룹 인원)는 개별적으로 법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함(민형사법원 판사(Session Court Judge), 치안판사 (Magistrate) 또는 사바주나 말레이시아의 입회변호사(Commissioner for Oaths) 하에 서명하고 소인(signed and stamped) 받을 것
- 주소: Kota Kinabalu High Court, Jalan Pantai, 88000 Kota Kinabalu, Sabah

2) 접근허가서(Access licence)

- 직접 서명/소인된 법정신고서를 사바생물다양성센터로 제출하고, 접근허가서 발급
- 주소: Sabah Biodiversity Centre, 19th Floor, Block A, Sabah State Administrative Building, 88400 Kota Kinabalu, Sabah

3) 전문가방문비자 신청서 서식(Immigration application forms for Professional Pass) 받기

- 코타키나발루 사바 이민국에서 전문가방문비자 신청서식 받을 것
- 주소: Immigration Department of Malaysia (Kota Kinabalu), Level 1-4, Block B, Federal Government Administration Complex, Jalan UMS, 88300 Kota Kinabalu, Sabah

4) 전문가방문비자 신청서 작성 및 지역공동연구자 만나기(Fill in the immigration application forms and meet your Local Collaborator)

- 전문가방문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역공동연구자가 신청자 보증자로서 서식중 하나에 서명하고 기타 추가서류를 제공. 체크리스트 확인요망.
- 주소: 지역공동연구자에게 확인할 것

5) 소인 요금(Stamp duty)

- 전문가방문비자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면, 가까운 우체국 또는 코타키나발루 세무서(Kota Kinabalu Income Tax Office (LHDN Kota Kinabalu))에 10링킷의 소인 요금 지불
- 주소: LHDN, Wisma Hasil, Jalan Tunku Abdul Rahman, 88600 Kota Kinabalu, Sabah

6) 전문가 방문비자 신청서 제출(Submit immigration forms)

- 코타키나발루 이민국에 전문가방문비자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일자를 확인할 것
- 주소: 전문가방문비자 신청서를 받은 곳

7) 자원관리자 연락(Contact resource manager(s))

- 각각의 자원관리자(제공자)의 지원/허가 서한을 참고하여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조건을 충족할 것
- 자원관리자에게 운영 및 안전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진입권(entry pass)을 발급받을 것
- 주소: 각각의 자원관리자가 서한에 명시한 주소

8) 현장연구 개시 및 SaBC로 보고서 제출(Commence your fieldwork and submit report to Sabah Biodiversity Centre and to other agencies)

- 연구가 종료되면, 사바생물다양성센터(SaBC), 지역공동연구자 및 자원관리자(제공자)에게 연구결과(보고서/논문/발표문)를 제출

4. 접근/반출에 대한 준수요건

표 12. 접근에 대한 법률 및 규칙 준수사항

- 1) 접근허가서 사본을 보관하고, 법정신고서를 준수 의무
- 2) [접근허가가 승인된] 본인만이 접근허가서에 명시된 접근이 허용된 생물자원 목록과 장소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
- 3) 코타키나발루 사바 이민국에 전문가방문비자 신청할 것. 비자 신청은 사바인민 제외되며,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 4) 관련 당국의 안내문/지시서한에 명시된 지역에 진입하기 전에 진입권(entry pass)을 발급받기 위해서 지역 공동연구자 또는 관련 자원관리자에게 보고할 것
- 5) 자원관리자 및 관련 당사국의 법률, 규범과 규칙 및 행동강령 준수 의무
- 6) 지역공동연구자, SaBC 및 관련 부처에 진행보고서 및/또는 최종 출판물/논문을 제출할 것
- 7) 말레이시아 국내외에서 특허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 신청 시, 먼저 SaBC의 사전 서면동의 받을 것
- 8) 접근허가서에 명시된 다른 조건을 준수할 것

표 13. 반출에 대한 법률과 규칙 준수사항

- 1) [반출허가 승인받은] 본인만이 생물자원(물량 포함)의 반출이 허용되며, 반출허가서에 명시된 운송 횟수를 집행할 것
- 2) 허가서와 4번 항목 상의 기타 법률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할 것.
 - 이하의 정보는 4번 항목에 따라 반출허가서에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임:
 - CITES 허가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대상 보호종에 대한 주의 요망. CITES 목록의 종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다음의 기관으로부터 추가적인 허가서 신청 필요: 사바야생생물국 (Sabah Wildlife Department-동물(어류와 산호 제외)과 식물(해양식물과 목재 제외)); 사바산림국(Sabah Forestry Department-목재); 사바어업국(Sabah Fisheries Department-어류, 산호 및 해양식물)
 - 동물 등 반출허가서: 동물, 동물상품 또는 식물을 사바주에서 반출하는 경우 허가서 신청의무-1997년 야생생물보전법(Wildlife Conservation Enactment 1997) 및 1998년 야생생물규칙(Wildlife Regulations 1998)의 부속서1의 서식22 제출 및 부속서2의 수수료 지급. 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사바야생생물국 또는 지역별 사무소(Kota Kinabalu (HQ), Keningau, Lahad Datu, Kinabatangan, Sandakan or Tawau)로 신청. 수입국이 요청하는 경우, 수입허가도 필요.
 -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PC): 1976 검역법은 다음의 식물/식물관련종에 대한 반출(말레이시아 주(州) 간 반출 포함) 규정 - 모든 종류의 식물 또는 그 부분 (생사와 관계없이, stem, branch, tuber, bulb, corm, stock, budwood, cutting, layer, slip, sucker, root, leaf, flower, fruit, seed 또는 기타 모든 부분), 또는 식물 상품(분리여부와 상관없음, 열/건조 처리된 상품 제외). 식물표본실 건본(실리카겔, 오븐건조 등), 식물조직 샘플(절단, 썰기, 오븐건조 등), 번식용 식물 또는 기타 부분도 PC 허

가서 대상임. 신청자는 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이후 PC를 사바농업국 또는 지역 사무소(Kota Kinabalu, Lahad Datu, Sandakan or Tawau)에 신청할 것.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수입허가서 필요.

- 연구목적으로 토양 샘플 반출: 수입국/요청국으로부터 수입허가서 획득이 필요하며(말레이시아 주(州) 간 포함), 수입국의 수입조건과 반출허가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
- 포장 지침: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서 규정한 포장지침을 준수할 것
- 기타 법률: 동 준수요건은 일반적인 지침에 해당함. 신청자는 지역공동연구자와 함께 해당 물질을 사바로부터의 반출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수입허가 포함).

3) 지역공동연구자는 신청자가 반출하기 이전에 샘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질반출신고서를 작성해야 함. 따라서 신청자는 지역공동연구자와 협업이 필요.

4) 신청자는 반출허가서에 규정된 다른 조건들을 준수해야 함.

5. 처벌규정

○ 접근허가서 또는 자원 이용 철회 및 종료

- 사바ABS법 위반 및 접근허가서 조건 위반: 접근허가서 및 생물자원/전통지식 사용 철회 및 종료 (사바법 25(2)조)
- 접근허가서 철회 시, 이사회는 철회로 발생한 손해, 피해 또는 배상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 (사바법 25(3)조)

○ 개인의 위반행위

구 분	위반 행위	처 벌
접근관련(26조)	(1) 접근허가서 없이 접근 (2) 잘못된 정보 제공 또는 정보 미제공 (3) 생물자원/전통지식을 이사회 승인없이 사바주에서 반출행위 (4) 이사회 승인없이 발표 또는 광고	30,000-100,000링깃 벌금형 또는 6개월-5년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병행
SaBC 자원 이용(27조)	SaBC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생물자원/전통지식, 전시물, 데이터, 물질 또는 정보물, 고의 또는 과실로 반출하거나 이용	30,000-100,000링깃 벌금형 또는 6개월-5년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병행
집행권 방해(33조)	이사회, 경찰, 관세청 등이 집행력 행사시 방해하는 경우	100,000링깃 벌금형 또는 1년 미만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병행

- 집행기관의 진입, 조사, 압류 및 체포권 (사바법 제29조-제32조)
 - 집행기관(이사회, 경찰, 관세청 또는 기타 권한이 부여된 기관)은 이용자가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위반행위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 영장 없이, 토지나 건물에 진입하여 조사 및 수색할 수 있으며;
 - 컬렉션, 연구, 연구/실험 관련 물건, 도구, 시설 또는 자료를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고;
 - 영장 없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자를 체포할 수 있음

-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의 책임 (사바법 제34조)
 - 법인의 위반행위 시, 법인의 책임자는 처벌대상에 해당
 -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위반행위가 본인의 동의없이 이뤄졌고; 본인은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함

6. 이익공유 절차 및 방법

1) 이익공유협정

- 상업적 또는 잠재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생물자원/전통지식에 접근 신청자는 자원제공자와 이익공유협정(benefit sharing agreement)을 체결할 의무가 있음(사바법 제24A조 1항)
- 이익공유협정은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에 기초해야 하고, 공정하고 형평한 이익공유를 규정해야 함(사바법 제24A조 2항)

2) 토착지역공동체의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 토착지역공동체 자원의 PIC 획득 및 MAT 체결 의무
 - 토착지역공동체(ILCs) 보유의 자원에 접근 시,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PIC) 획득 의무가 있음(사바법 제24B조 1항, 제24B조 1항)

- 자원제공자가 토착지역공동체인 경우, 토착지역공동체와 이익공유협정을 체결해야 함(사바법 제 23B조 3항)

- 토착지역공동체 자원의 PIC 획득과 MAT 체결 대상자(사바법 제24B조 4항)
 - 토착지역공동체 관습법, 관행, 규약 및 절차에서 정한 대표 또는 기구
 - 이러한 대표나 기구가 없는 경우,
 - 토착지역공동체에서 관련 지식 보유자
 - 주 정부 (지식보유자 확인이 안되는 경우)

- 동일한 전통지식이 1개 이상의 ILCs와 공유되는 경우(사바법 제24B조 6항)
 - 신청자는 전통지식의 모든 보유자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기구를 통해 PIC 획득과 MAT 체결
 - 모든 보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사바생물다양성이사회가 허가한 경우, 신청자는 신청자가 확인할 수 있는 보유자의 대표자 또는 기구로부터 PIC 획득 및 MAT 체결

- 신청 승인 이후에 특정 ILCs가 전통지식의 보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 사바생물다양성 이사회는 이하를 결정(사바법 제24B조 7항)
 - PIC을 승인하고 MAT를 체결한 ILCs와 협의하여 결정
 - 이러한 주장이 증명된 경우, 이사회는 해당 ILCs에게 이익공유협정에 따라 이익을 공유할 권리를 선언
 - 모든 관련 ILCs와 협의하여, 해당 ILCs에게 부여된 이익의 성격을 결정

제 5 절

사라왈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제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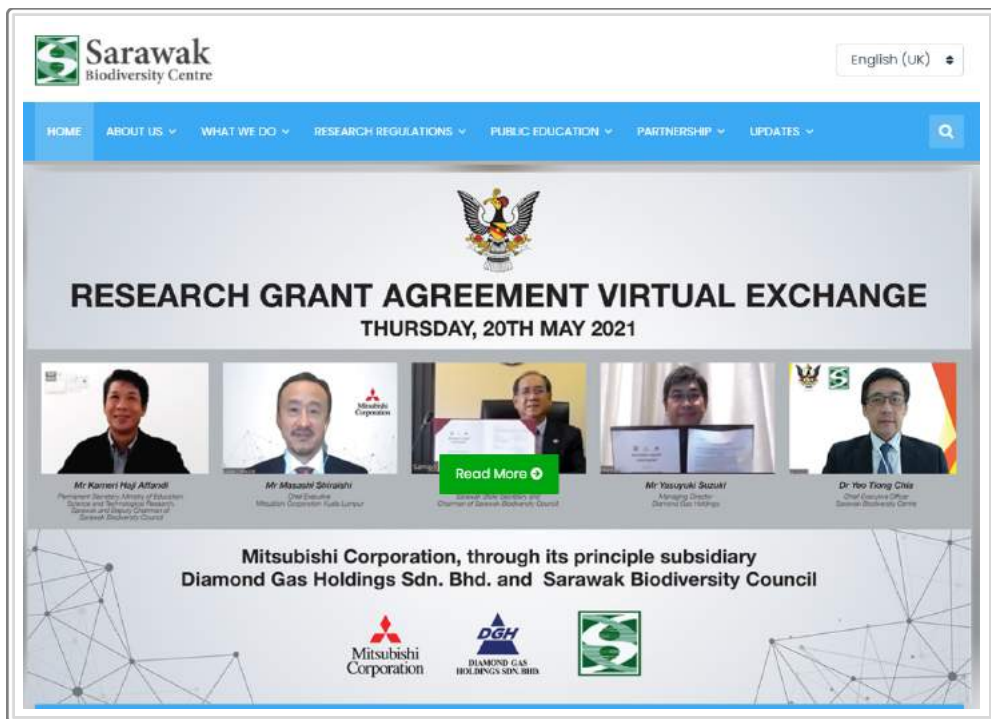
사라왁주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I 온라인허가시스템 이용절차

1. 개요

- 사라왁주 생물자원 접근/반출에 관한 담당기관은 사라왁생물다양성센터(Sarawak Biodiversity Center)이며,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sbc.org.my/>

그림 20. 사라왁생물다양성센터 웹사이트 첫 페이지



○ 현지인이나 외국인이 사라왁주 생물자원에 접근/반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Sarawak Online Research Application System (SORAS)을 통해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함

- <https://soras.sarawak.gov.my/soras/welcome>
- 문의처
 - * Ms. Suhailah binti Za'afar (전화 : 082-319 097)
 - * Mr. Mohammad Firdaus bin Haji Fazil (전화 : 082-319 098 / 이메일 : mdfirdaus@sarawak.gov.my)
 - * Ms. Siti Rudzaina binti Mohd. Rudzaini (전화 : 082-319 419 / 이메일 : sitirr@sarawak.gov.my)

그림 21. Sarawak Online Research Application System 첫 페이지



2. 세부 절차

1) 등록

- 로그인을 위해 먼저 'Register' 버튼을 누르고 등록절차를 밟음



The screenshot shows a 'LOGIN'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User ID', 'Password', and 'CAPTCHA'. Below the CAPTCHA field is a green 'Login' button and a blue 'Register' button. The 'Register'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re is also a 'Forgot Password' link next to the 'Register' button. A CAPTCHA image showing the number '7876' is displayed above the CAPTCHA input field.

- ID, 이름,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약관에 동의하고 Register 버튼을 누름



The screenshot shows a 'Register' form with the following fields: 'User ID*', 'User Name*', 'Password*', and 'Email Address*'. Below the 'Email Address*' field is a checkbox with the text 'I confirm that I have read and I accept the Privacy Policy and Terms & Conditions.' The 'Register' button is locat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form. Red boxes and numbers highlight the 'User ID*' field (1), the checkbox (2), and the 'Register' button (3).

2) 로그인

-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름



3) 신청

- 신청을 위하여 SORAS > RESEARCH APPLICATION을 클릭함



- RESEARCH APPLICATION에서 New Application을 클릭함



- 아래의 각각의 탭을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입력함



① PART 1: 연구정보(PROJECT INFORMATION)

- 연구 주제, 유형, 계획 등 연구 정보 입력

Please include list of research activities with expected starting and ending dates, dates of submission of draft and final reports. Please upload a Gantt Chart under **Attachment** tab.

3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h: Research Methodology

This part is to be completed according to the outline as provided in the form.

(i) Type of biological resources to be collected in terms of species, parts of organism and quantities.*

100 characters remaining

(ii) Type of biological data to be collected.*

100 characters remaining

(iii) The time of executing or carrying out the collection activities.*

100 characters remaining

(iv) The place of executing or carrying out the collection activities.*

450 characters remaining

(v) The methods of executing or carrying out the collection activities.*

450 characters remaining

(vi) The local informants involved in the case of ethnobiological research.*

100 characters remaining

(vii) The use(s) of the collected biological resources.*

450 characters remaining

PROJECT INFO	ORGANIZATION	RESEARCHER(S)	IMPORT	EXPORT	ATTACHMENTS
--------------	--------------	---------------	--------	--------	-------------

☰ PART 1: PROJECT INFORMATION

Part 1a: Project Title*

2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b: Project Classification*

e.g. botanical, zoological, microbiological, mycological, ethnobotanical, etc.

1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c: Project Abstract*

8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d: Project Background*

(a) Rationale of the study.

450 characters remaining

(b) Significance and benefits to Sarawak (in terms of the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ly sou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3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e: Project Objectives*

3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f: Project Scope*

3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g: Proposed Schedule Works*

(viii) The plan for evalu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collected. Please elaborate on the research activities to be carried out on the biological resources collected.*

450 characters remaining

(ix) The final destin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collected.*

2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i: Institution(s)

Name(s) and address(es) of the Institution(s) in which the research/analysis will take place.*

2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j: Expected Results and Programme Output*

8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k: The anticipated and final destination of the information resulting from the access, collection and research*

3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l: The anticipated uses of the information and end product*

3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m: Financial Sponsor

The financial sponsor must disclaim and waive all rights to any discovery or invention which may result from this project and any other activity pertaining to any biological resources of Sarawak. Please complete Attachment 2.

Name*

**Amount
(RM)***

Address*

100 characters remaining

**Terms and
conditions of
sponsorship***

450 characters remaining

Part 1n: Permission to enter project location

Please specify the permit(s) number and attach a copy of the permit(s) from the relevant authority under **Attachment** tab. For ethno-biological research please attach a copy of the Letter of Consent from the community leader under **Attachment** tab. For more information on Letter of Consent, please contact Sarawak Biodiversity Centre.

100 characters remaining

Part 1o: Local Collaborator (If applicable)

Please specify the permit(s) number and attach a copy of the permit(s) from the relevant authority under **Attachment** tab. For ethno-biological research please attach a copy of the Letter of Consent from the community leader under **Attachment** tab. For more information on Letter of Consent, please contact Sarawak Biodiversity Centre.

100 characters remaining

② PART 2: 기관 정보(ORGANIZATION PROFILE)

- 기관 정보 입력

PROJECT INFO	ORGANIZATION	RESEARCHER(S)	IMPORT	EXPORT	ATTACHMENTS
<h3>☰ PART 2: ORGANIZATION PROFILE</h3> <p>This part consists of information on the organization in which the applicant is affiliated to. All fields MUST be completed by the applicant. Commercial organizations are ALSO required to complete Attachment 1.</p>					
Name of Organization*		<input type="text"/>			
Registered Address		<input type="text"/>			
Correspondence Address*		<input type="checkbox"/> Same as Registered Address <input type="text"/>			
Business Address (if applicable)		<input type="text"/>			
Telephone Number*		<input type="text"/>	Fax Number*		<input type="text"/>
Email Address*		<input type="text"/>	Website*		<input type="text"/>
Date of Establishment		<input type="text"/>	Registration Number		<input type="text"/>
Summary of the organization's core business		<input type="text"/>			
Contact details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organization*		Please specify contact person/local contact/academic supervisor, telephone number & email address <input type="text"/>			

③ PART 3: 연구자(INFORMATION OF THE APPLICANT AND RESEARCHER(S))

- 연구자 상세 입력

PROJECT INFO
ORGANIZATION
RESEARCHER(S)
IMPORT
EXPORT
ATTACHMENTS


☰ PART 3: INFORMATION OF THE APPLICANT AND RESEARCHER(S)

This part must be completed by the **applicant** and **EACH researcher/ team member** involved in the project.

#1 LEADER
+


Part 3a: Personal Details

Photo*




Researcher's Type* Leader

Name* LEE JOONPYO **Gender*** Male Female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Citizenship* --- Please Select --- **Are you a Sarawakian?** Yes No

Marital Status Married Single

IC/ Passport No.* **Passport Expiry Date** 

Correspondence Address **Permanent Address**

Contact No. 🇲🇾 **Fax Number** 🇲🇾

Email Address eagleeagle55@naver.com

Occupation **Designation**

④ PART 4: 수입될 생명자원 상세 입력(DETAILS OF BIOLOGICAL RESOURCES TO BE IMPORTED)

- 수입될 생명자원 상세 입력

No.	Scientific Name / Local Name*	Part(s) Of Organism*	Quantity*	Country Of Origin*	Full Address Of Final Destination*	Recipient Name*	Remarks
No Result Found							

⑤ PART 5: 수출될 생명자원 상세 입력(DETAILS OF BIOLOGICAL RESOURCES TO BE EXPORTED)

- 수출될 생명자원 상세 입력

No.	Scientific Name / Local Name*	Part(s) Of Organism*	Quantity*	Country Of Origin*	Full Address Of Final Destination*	Recipient Name*	Remarks
No Result Found							

⑥ PART 6: 첨부자료(SUPPORTING DOCUMENTS & ATTACHMENTS)

- 증빙자료 업로드

No.	Attachment	Description
No Result Found		

4) 제출 완료

- 입력을 마친 후,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제출(Submit) 버튼을 누름

Are you sure?

2 Yes No

Save Submit 1

Submit

1 I hereby declare that the details furnished above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and I undertake to inform you of any changes therein, immediately. In case any of the above information is found to be false or untrue or misleading or misrepresenting, I am aware that I may be held liable for it.

2 Submit

II 사라왁 주 법의 상세 내용

1. 사전통고승인(PIC) (22-26조)

○ 신청절차

- 토착지역공동체 장에게 말레이어로 서면으로 신청
-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접근하고자 하는 생물자원 종류(해당 지역에서의 호칭 제시), 필요수량, 접근 빈도, 목적, 접근 활동 시작일과 기간, 지리적 영역, 방법 등 세부 사항
 - 취득 지식 또는 자원의 예상 용도
 - 접근 활동의 각 단계에서 사회, 문화,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예비 평가
 - 참여하는 개인/기관 및 협력 기관 정보
 - 제안된 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관계자, 연구기관 및 공무원 인원
 - 활동 또는 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 있는 절차
 - 이익에 대한 제안
 - 생물 자원 및 전통 지식의 접근 또는 이용을 금지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지역 사회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선택
 - 이후 공개 시 인용, 익명성 및 기밀성에 관한 절차.

○ 동의 조건

- 추가 수량의 생물자원이 필요하거나 연구를 통해 상업적 가치를 가진 시제품이 완성된 경우, 이익 분배계약을 체결하는 법적구속력이 있는 합의
- 특허권한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지역사회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 및 특허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허증 관련 정보를 해당 지역에 제공하는 법적구속력 있는 합의
- 특정 지역에서의 접근 제한
- 지역 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간격으로, 연구의 진행 상황에 관한 정기 보고서 제출

- 수집한 자원과 그 수량에 관한 신고
- 자원 채집에 사회 참여
- 적절한 경우, 지역 사회에 속한 사람들에 의한 계약 재배 및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른 활동 실시에 참가
- 지역 사회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동의 기간
- 관계하는 지역 사회의 관습상의 기준 및 관행의 준수
- 지역 사회에 의해 지명되는 지역의 공동 연구자
- 연구 및 개발의 결과에 대한 설명과 지역 사회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의 실시 과정에서 발견에 관한 설명의 제출
- 신청자가 합병, 구조 조정, 권리의 이전, 기타 법인 또는 합작에 의한 매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된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사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 또는 정보에 근거한 사전 동의 대신 조건이 새로운 법인 양수인 또는 이전의 수용 시설에 대한 법적 구속력 여부에 대한 설명
- 관련된 모든 법적 요구 사항 준수

○ PIC 형식

- 말레이어로 서면으로 함
- 항목
 - 관련 당사자
 - 관련 자원
 - 취득이 인정되는 수량
 - 동의기간
 - 당사자의 책임
 - 기타 토착지역공동체에서 합의된 조건

2. 상호합의조건(MAT) (14조)

- 해당 연구 및 개발의 실시가 예정되는 사라왁 내 또는 사라왁 밖 장소 또는 기관
- 실시된 연구 및 개발 보고서, 데이터, 조사 또는 결과에 대해 정부에 대신 평의회가 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 실시된 연구 및 개발, 또는 당해 연구 및 개발에서 발생하는 발견에 관한 특허권 및 지식 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권리 및 해당하는 경우 이익분배 합의된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권리의 공유
- 정부가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권리 및 당해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얻을 권리
- 해당 연구 및 개발에서 발생 또는 생성된 보고서 데이터 조사 또는 결과의 은닉 사항으로 취급
- 국가의 과학자 훈련 및 당해 연구 및 개발 참여를 포함한 해당 합의의 대상이 되는 연구 및 개발에서 발생하는 기술, 기능 및 지식의 이전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약정
- 생물자원의 연구 및 개발 또는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 및 결과의 소유권
- 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이익 배분 계약에 따라 얻은 금전적 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을 위원회가 구성 및 관리 할 수 있는 기금에 지불하도록 요구
- 위원회는 수령한 지불금 또는 그 일부를 생물자원의 보전과 생물자원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비용에 적용
- 이익은 금전적 이익 및 비금전적 이익을 포함할 수 부칙에 명시되는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위원회와 신청자 사이,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는 원주민 사이에 합의 할 수 있는 다른 조건

3. 이익공유의 내용 (부칙)

○ 금전적 이익

- 접근에 대한 요금 / 채집 또는 다른 방법으로 얻은 시료 당 요금
- 선불금

- 단계별 지불
- 로열티 지불
- 상업화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
-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지원하는 신탁 기금에 지급되는 특별 요금
-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는 급여 및 특혜적인 조건.
- 연구 자금
- 합작 및
-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 비금전적이익

- 연구 및 개발 성과의 공유
- 과학적인 연구 개발 계획, 특히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생명 공학 연구 활동의 공동 협력 및 공헌
- 제품 개발에 참여.
- 교육 및 훈련의 공동 협력 및 공헌
- 유전자원의 서식 역외 보전 시설에 대한 출입 및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 유전자원의 제공에 대한 정당한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의 지식과 기술, 특히 생명 공학 또는 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지식 및 기술 또는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의 이전
- 기술 이전을 위한 능력 강화
- 제도적인 능력 개발
- 접근 규칙을 실시 및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 유전자원 제공국의 충분한 참여와 함께, 그리고 가능한 경우 유전자원 제공국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원에 대한 훈련
- 생물 목록 및 분류 연구를 포함하여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

- 지역 경제에 기여
-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의 유전자원의 국내 이용을 고려하여 보건 및 식량 안보 등 우선순위가 높은 요구 사항을 위해 행해지는 연구
- 접근과 이익분배에 관한 합의에서 발생하는 조직 및 직업상의 관계 및 그 공동 활동
- 식량 안보와 생계의 확보에 관한 이익
- 사회적인지 및
- 관련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4. 처벌규정(38조)

- 개인의 경우, 5만 링깃 이상 20만 링깃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
- 법인의 경우, 10만 링깃 이상 50만 링깃 이하의 벌금

5. 수수료(36조)

구 분	유형	비 용
허가신청비	현지 연구자 및 비상업적 신청자	RM 100.00
	외국 연구자 및 비상업적 신청자	USD 100.00
	현지 상업적 신청자	RM 500.00
	외국 상업적 신청자	USD 500.00
보증금	현지 연구자 및 비상업적 신청자	RM 200.00
	외국 연구자 및 비상업적 신청자	USD 200.00
	현지 상업적 신청자	RM 5000.00
	외국 상업적 신청자	USD 5000.00

부 록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1.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2020)상 허가신청서

FIRST SCHEDULE

[Subregulations 4(1) and 6(1) and regulation 13]

FORM 1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7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REGULATIONS 2020

APPLICATION FOR A PERMIT

PART A

Particulars of applicant (Individual)	
1. Full name:	
2. *Identity card no./Passport no:	
3. Permanent address:	
4. Correspondence address: <i>(if different from above)</i>	
5. Designation:	
6. Institution/Organisation:	
7. Telephone no. (house): (office):	
8. Fax no. (office):	
9. Email:	
10. *Relevant qualifications or experience of applicant:	
Other persons involved in the research	
1. Full name:	
2. Identity card no./Passport no:	
3. Address:	
4. Telephone no.:	

[*Please attach relevant documents of authentication]

Particulars of applicant (Firm/Body Corporate/Institution/Organisation)	
1. Registered name:	
2. *Registration no.:	
3. Registered address:	
4. Business address: <i>(if different from above)</i>	
5. Date of establishment of the firm/body corporate/institution/organisation:	
6. *Firm's/Body corporate's profile <i>(where applicable)</i>	
7. Website:	
8. Telephone no.:	
9. Fax no. (office):	
10. Email:	

[*Please attach relevant documents of authentication]

PART B

Particulars of the project	
1. Project title:	
2. Purpose of the application:	<input type="checkbox"/> for COMMERCIAL OR POTENTIAL COMMERCIAL purpose (Section 12) or <input type="checkbox"/> for NON-COMMERCIAL purpose (Section 15)
3. Objective of the project:	
4. Local collaborator	<i>(for non commercial purposes only):</i>
Institution/Organisation:	
Registered address:	
Business address:	
Correspondence address: <i>(if different from above)</i>	
Registration no.:	
Website:	
Person to contact:	
Phone (house): (office):	
Fax no. (office):	
Email:	

[*Please attach relevant documents of authentication]

PART C

Particulars of the collection of biological resource(s)

Identific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If unknown, please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sampling methods and the quantity and type of organisms likely to be collected using those methods):*

Common name	Taxon (to the most specific taxonomic level known)	Part of the organism collected (if known)	Volume
1. When will the collection take place	From: To:		
2. Where will the collection take place	Location(s): Latitude/Longitude: <i>(*Map/Plan attached)</i>		
3. Do you intend to re-collect at this locatio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when and how often			
4. How is the collection to be undertaken	Vessel/Vehicles: Equipment:		
5. Whether any collec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 endangers any component of biodiversity and the risks which may arise from the collection			
6. Whether any collec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 may have adverse effect on indigenous community and local community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7. Methods to be used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including on protected wildlife/totally protected wildlife/scheduled species') at the collection location			
8. Methods to be used to minimize social impacts in relation to item 7			
9. Where will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be carried out			
10. Use(s) of the biological resources			

P.U. (A) 361

11. Use(s) of the biological resources that is proposed to be made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a biological resource	
12. Identify how access to these biological resources will benefit biodiversity conservation. Specify any likely benefits for the access area	
13. Proposed location(s) of the deposition of duplicate sample(s)	
14. All other applications for permits in relation to the same biological resources and/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a biological resource (in other State or Federal areas in Malaysia)	
15. *Details of any other permit granted in relation to the same biological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a biological resource (in other State or Federal areas in Malaysia)	
16. *Details of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indigenous community and local community	
17. *Details of the benefit sharing agreement with resource provider	

[*Please attach relevant documents of authentication]

PART D

Declaration

I/we declare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e application form is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our knowledge and I/we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incorrect or false information.

Date:

.....
Signature of applicant

(번역) 1.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시행규칙(2020)상 허가신청서

PART A

신청자 상세(개인)	
1. 이름	
2. 신분증번호/ 여권번호	
3. 주소	
4. 주소(실제 거주지)	
5. designation	
6. 기관	
7. 전화번호(집/사무실)	
8. 팩스번호(사무실)	
9. 이메일	
10. 신청자의 관련 자격이나 경력	
기타 연구 관련인	
1. 이름	
2. 신분증번호/ 여권번호	
3. 주소	
4. 전화번호	
신청자 상세(기업/법인/기관)	
등록명	
2. 등록번호	
3. 등록 주소	
4. 실제 회사 주소	
5. 설립일	
6. 프로필	
7. 웹사이트	
8. 전화번호	
9. 팩스 번호(사무소)	
10. 이메일	

PART B

프로젝트 상세	
1. 프로젝트 제목	
2. 신청 목적	<input type="checkbox"/> (잠재적) 상업적 목적(법 제12조) 또는 <input type="checkbox"/> 비상업적 목적(제15조)
3. 프로젝트 대상	
4. 지역 협력자	(비상업적 목적인 경우에만)
기관	
등록주소	
기업주소	
실제주소	
등록번호	
웹사이트	
연락인	
전화번호(집/사무소)	
팩스번호(사무소)	
이메일	

PART C

생물자원 수집 상세

이름	분류군	수집된 유기체 일부	양
1. 수집 기간		~부터 ~까지	
2. 수집 장소		위치: 위도/경도: (지도첨부)	

3. 이 장소에서 재수집 의사가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있다면 언제, 얼마동안?	
4. 수집 진행 방식	선박/차량: 장비:
5. 생물자원의 수집이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위협하는지, 수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 여부	
6. 생물자원의 수집이 토착지역공동체에 부작용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수집 지역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8. 7항 관련 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	
9. 연구개발이 수행되는 장소	
10. 생물자원의 이용	
11. 생물자원과 연계된 전통지식으로 만들어진 생물자원의 이용	
12. 생물자원 접근이 생물다양성보전에 어떻게 이익을 줄 것인지 밝힐 것	
13. 샘플 사본의 제안된 위치	
14. 동일한 생물자원이나 생물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관한 모든 기타 허가신청	
15. 동일한 생물자원이나 생물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관해 부여된 기타 허가에 대한 상세	
16. 토착지역공동체의 사전통고승인의 상세	
17. 자원제공자와의 이익공유협정 상세	

PART D 선언

나/우리는 신청서에 작성한 정보가 진실함을 선언하고, 잘못되거나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2. 사전통고승인(비상업적 목적) 서식

PRIOR INFORMED CONSENT _____ COMMUNITY (Non-Commercial Research)

We, the undersigned, in representation of the indigenous or local community named here _____ (*name of community*), (“our Community”) holder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biological resource specified below (“our Traditional Knowledge”) and / or biological resource specified below on land to which we have a right (“our Biological Resource”), hereby confirm that:

Our Community wishes to provide our Traditional Knowledge and / or our Biological Resource (to delete as appropriat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_____ (*name of applicant*) (“the User”).

This decision has been taken:


- a) on the basis of information provided to us about the User and the use of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which we have read and understood; and
- b) following the process as recommended by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tocol; and
- c) through a culturally appropriate process of discussion and consultation in accordance with our customary laws and practices, protocols and procedures.

_____ [*give name(s) of information-providers*]

are authorised to provide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in accordance with this PIC although we may nominate persons or entities to provide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from time to time.

We understand that our participation is entirely voluntary and consent is given free from coercion, duress or misrepresentation.

We understand that we may withdraw our participation, or any part of it, at any time without explanation or consequences, provided always that a benefit sharing



agreement has not been entered into, and that, if we do, *will be subjecte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uch agreement OR *are entitled to request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be removed from the User's records and / or collection and excluded from any future analyses.

** delete whichever inappropriate*

We are providing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on the basis that we will retain all our IPR as recognised by law, unless otherwise agreed to in a benefit sharing agreement. There will be no assump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in any such intellectual property to the User or any of its partners, agents or members as a result of any contribution by us of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We are providing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on the basis that it will not be put to commercial use by the User, or any of its partners, agents or members or any other third party. In the event that there is an intention of using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for commercial use, a benefit-sharing agreement must first be entered into with the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7 and our customary laws and practices, protocols and procedures.

Any transfer of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or any data in relation to or derived from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or the results of research to a third party is strictly prohibited unless and until a written confirmation has been granted by the Community and that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is fully protected by the User.

We are providing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on the basis that sensitive information about personal identity as well as confidential information will not be disclosed, published or otherwise revealed to any other party whatsoever except with specific prior written authorization.

We understand that if we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User or the use of any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which we have provided, or if we have any

complaints or concerns relating to the User, we may contact the User’s managers / person-in-charge who will discuss our queries or concerns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on an appropriate solution.

Other terms and conditions:

Details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biological resource (and its use):

Details of biological resource:

Dated:

Witnessed by,

(Signature / Thumb print)

(Signature / Thumb print)

Name of Community:

Name:

Name of representative:

NRIC No.:

NRIC No.:

Interpreted into _____ language by

Witnessed by,

(Signature / Thumb print)

(Signature / Thumb print)

Name of Community:

Name:

NRIC No.

NRIC No.

Three (3) copies of this PIC must be prepared and signed. A copy of this form will be left with the community, a copy will be kept with the User and a copy will be kept by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This form can be accessed / downloaded online at <https://www.myabs.gov.my/>

(번역) 2. 사전통고승인(비상업적 목적) 서식

사전통고승인(PIC)

_____ 공동체

(비상업적 연구)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물자원 및/ 또는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동체 이름) (이하 '공동체') 라는 토착지역공동체를 대표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전통지식 및/ 또는 생물자원을 (신청자 이름) (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

이 결정은

- a) 이용자, 자원의 이용, 기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 b) PIC 의정서(Protocol)에서 권장하는 절차를 따른 것이다.
- c) 우리의 관습법, 관행, 의정서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토의와 협의과정을 거친 것이다.

(정보제공자 이름) 은 이 PIC에 따라 이용자에게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지만 때때로 이러한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사람이나 단체를 지명할 수 있다.

우리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강압, 강박 또는 허위 진술 없이 동의를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익 공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조건없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한 계약의 조건 또는 이용자의 기록 및/ 또는 수집에서 우리의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제거하고 향후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익 공유 계약에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법으로 인정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우리가 그러한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 결과로 그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파트너, 대리인 또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용자, 파트너, 대리인, 구성원 또는 기타 제3자가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자원 및/또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그러한 자원 및/또는 정보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과 우리의 관습법 및 관행과 절차 등에 따라 공동체와 이익 공유 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

우리의 자원 및/또는 정보나 데이터나 연구 결과에 대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서면에 의한 공동체의 승인이 있고 공동체의 이익이 이용자에 의해 확실하게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이전이 인정된다.

우리는 개인 신원 및 기밀 정보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특정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개, 출판 또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자원/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용자의 운영 또는 우리가 제공한 자원 및/또는 정보의 이용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이용자와 관련하여 불만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관리자나 책임자에게 적절한 솔루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다.

기타 조건:

생물자원(및 그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세부사항:

생물자원 세부사항:

날짜:

(서명 / 지장)

공동체 이름:

대표자 이름:

국가식별(NRIC) 번호:

(서명 / 지장)

이름:

국가식별(NRIC) 번호:

_____에 의해 _____어로 번역됨

(서명 / 지장)

공동체 이름:

대표자 이름:

(서명 / 지장)

이름:

국가식별(NRIC) 번호:

PIC 사본 3부를 준비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 사본은 토착지역공동체, 이용자, 책임기관에 각각 보관된다.
이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www.myabs.gov.my/>

3. 사전통고승인(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 서식

PRIOR INFORMED CONSENT

_____ COMMUNITY

(Commercial or Potential Commercial Research)

We, the undersigned, in representation of the indigenous or local community named here _____ (*name of community*), (“our Community”) holder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biological resource specified below (“our Traditional Knowledge”) and / or biological resource specified below on land to which we have a right (“our Biological Resource”), hereby confirm that:

Our Community wishes to provide our Traditional Knowledge and / or our Biological Resource (to delete as appropriat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name of applicant*) _____ (“the User”).


The User intend to use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for purposes of commercial or potential commercial research with a view to develop a product in the *field of* (*pharmaceutical / nutraceutical / cosmetic / food / etc*) _____.

This decision has been taken:

- a) on the basis of information provided to us about the User and the use of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which we have read and understood; and
- b) following the process as recommended by the Prior Informed Consent Protocol; and through a culturally appropriate process of discussion and consultation in accordance with our customary laws and practices, protocols and procedures.

_____ [*give name(s) of information-providers*]

are authorised to provide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in accordance with this PIC although we may nominate persons or entities to provide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from time to time.



We understand that our participation is entirely voluntary and consent is given free from coercion, duress or misrepresentation.

We understand that we may withdraw our participation, or any part of it, at any time without explanation or consequences, provided always that a benefit sharing agreement has not been entered into, and that, if we do, *will be subjected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n such agreement OR *are entitled to request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be removed from the User's records and / or collection and excluded from any future analyses.

**delete whichever inappropriate*

We are providing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on the basis that we will retain all our IPR as recognised by law, unless otherwise agreed to in a benefit sharing agreement. There will be no assumption of transfer of ownership rights in any such intellectual property to the User or any of its partners, agents or members as a result of any contribution by us of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This PIC does not give the User the right to access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until a benefit sharing agreement has been concluded and entered into with the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7 and our customary laws and practices, protocols and procedures.

Any transfer of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or any data in relation to or derived from our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or the results of research to a third party is strictly prohibited unless and until a written confirmation has been granted by the Community and that the interest of the Community is fully protected by the User.

We are providing such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to the User on the basis that sensitive information about personal identity as well as confidential information will not be disclosed, published or otherwise revealed to any other party whatsoever except with specific prior written authorization.

We understand that if we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operation of the User or the use of any resource and / or information which we have provided, or if we have any complaints or concerns relating to the User, we may contact the User’s managers /person-in-charge who will discuss our queries or concerns with a view to reaching agreement on an appropriate solution.

Other terms and conditions: _____

Details of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biological resource (and its use):

Details of biological resource:

Dated:

Witnessed by,

(Signature / Thumb print)

Name of Community:

Name of representative:

NRIC No.:

(Signature / Thumb print)

Name:

NRIC No.:

Interpreted into _____ language by
(if any)

Witnessed by,

(Signature / Thumb print)


Name of Community:

NRIC No.

(Signature / Thumb print)

Name:

NRIC No.



Three (3) copies of this PIC must be prepared and signed. A copy of this form will be left with the community, a copy will be kept with the User and a copy will be kept by the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This form can be accessed / downloaded online at <https://www.myabs.gov.my/>

(번역) 3. 사전통고승인(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 서식

사전통고승인(PIC)

공동체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연구)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생물자원 및/ 또는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공동체 이름) (이하 '공동체') 라는 토착지역공동체를 대표하여 다음의 내용을 확인한다.

우리 공동체는 우리의 전통지식 및/ 또는 생물자원을 (신청자 이름) (이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

이용자는 (제약/기능식품/화장품/식품 등) 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의도가 있다.

이 결정은

- a) 이용자, 자원의 이용, 기타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 b) PIC 의정서(Protocol)에서 권장하는 절차를 따른 것이다; 우리의 관습법, 관행, 의정서 및 절차에 따라 적절한 토의와 협의과정을 거친 것이다.

(정보제공자 이름) 은 이 PIC에 따라 이용자에게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있지만 때때로 이러한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사람이나 단체를 지명할 수 있다.

우리의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강압, 강박 또는 허위 진술 없이 동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익 공유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조건없이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야 함을 알고 있다. 그러한 계약의 조건 또는 이용자의 기록 및/ 또는 수집에서 우리의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제거하고 향후 분석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이익 공유 계약에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법으로 인정된 모든 지식재산권을 보유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이러한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우리가 그러한 자원 및/ 또는 정보를 이용

자에게 제공한 결과로 그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파트너, 대리인 또는 구성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과 우리의 관습법 및 관행과 절차 등에 따라 공동체와 이익 공유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본 PIC이 이용자에게 자원 및/또는 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원 및/또는 정보나 데이터나 연구 결과에 대해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다만, 서면에 의한 공동체의 승인이 있고 공동체의 이익이 이용자에 의해 확실하게 보호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이전이 인정된다.

우리는 개인 신원 및 기밀 정보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특정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개, 출판 또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자원/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이용자의 운영 또는 우리가 제공한 자원 및/또는 정보의 이용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이용자와 관련하여 불만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관리자나 책임자에게 적절한 솔루션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다.

기타 조건:

생물자원(및 그 이용)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세부사항:

생물자원 세부사항:

날짜:

(서명 / 지장)

공동체 이름:

대표자 이름:

국가식별(NRIC) 번호:

(서명 / 지장)

이름:

국가식별(NRIC) 번호:

_____에 의해 _____어로 번역됨

(서명 / 지장)

공동체 이름:

대표자 이름:

(서명 / 지장)

이름:

국가식별(NRIC) 번호:

PIC 사본 3부를 준비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 사본은 토착지역공동체, 이용자, 책임기관에 각각 보관된다. 이 양식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s://www.myabs.gov.my/>

4. 이익공유계약(안) 서식

Model Benefit Sharing Agreement

Draft (1)

(10 March 2017)

PROPOSED MODEL BENEFIT-SHARING AGREEMENT

THIS AGREEMENT is made this ____ day of ____ (month)(year)

Parties

BETWEEN

[If company]

(*Name*) (*Company No.* _____) a company incorporated under the laws of Malaysia and having its registered office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or address at _____ (address) referred to as the 'Access Party'.

[If person] /

(Name) (IC number / Passport No.) of (address) referred to as the Access Party.

AND

(*Name*)(*IC number*) _____ (the 'Provider'.

If with community:

(*Name*) (*IC number*) _____ (for and behalf of himself and all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known as _____ (at Long / Ulu _____ (referred to as the 'Provider'.

Preamble

- A. The Access Party seeks access to the Biological Resource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²⁶ from the Provider as described in SCHEDULE 1 of this Agreement.
- B. The Provider is willing to provide such Biological Resource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upon the terms and conditions stated in this Agreement.
- C. The Access Party warrants that it has completed all the necessary procedures and has secured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Provider in accordance with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7 and all relevant regulations and protocols made under it.

NOW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AGREE AS FOLLOWS:

1. Definition

In this Agreemen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the following terms must bear the following meanings:

Access means the taking of a biological resource from its natural habitat or place where it is kept, grown or found including the market place,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ccess Party means a person, organisation or other entity that seeks and / or has been granted the right to access particular biological resources and / 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greement means this instrument and all Schedules to this Agreement as the same may be amended, modified or supplemented from time to time in accordance with these provisions;

Act refers to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7 and the regulations and protocols made under it;

Benefits mean the monetary and non-monetary payments or awards arising out of the utilis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Biological resource includes genetic resources, organisms, microorganisms, derivatives and parts of the genetic resources, organisms, microorganisms or derivatives; populations and any other biotic component of an ecosystem with actual or potential use or value for humanity; and any information in relation thereto;

Commencement Date means the [date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date];

Commercial use / commercialisation means the use of the biological resource or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for the generation of any kind of actual or potential economic profit. It includes any sale, lease, licensing of the biological resource, and / or products generated from its use through actions such as filing a patent application, obtaining IPR or other tangible or intangible rights. It includes any transfer of the biological resource to a for-profit organisation and the acts of making, import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using the product or stocking such product for the purpose of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using;

Derivatives mean a naturally occurring biochemical compound derived, developed or synthesized, from a biological resource or resulting from the genetic expression or metabolism of the biological or genetic resource, or part, tissue or extract, whether it contains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or otherwise, and information in relation to derivatives;

Force Majeure means circumstances including but without limitation to any act of God, act of government, embargo or other circumstances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y any of the parties;

Genetic resource includes any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organism, fungi or other origin that contains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and that has actual or potential value for humanity;

Intellectual Property means any copyright, trade mark, service mark, industrial design, patent or any other form of intellectual property, any application for such protection, and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in relation thereto which are subsisting at the relevant time;

Net Sales Value means in relation to any of the Products the price charged to the customers less any sales tax but without deduction or any discounts or rebates granted to the customers; [OR the price as invoiced after deducting normal trade discounts actually granted, sales commission, any costs of packaging, insurance, transport (or freight), sales tax and import duties or any government levies]

Prior Informed Consent refers to the free assent to grant access based on complete and accurate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well in advance to the Provider by any party seeking access;

Product or products means the products which are manufactured from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cessed including any modification thereof;

Provider includes an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 or individual that possesses the resource, o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 where the resource is on land to which they have a right as established by law, or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 where they are the holders of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shall, where the context admits, include members of the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y;

Quarter Year means each period of three months during the term starting on the Commencement Date;

Term means the agreed period during which this Agreement continues in force pursuant to clause(where applicable);

Traditional Knowledge includes the accumulated knowledge that is vital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resources and/or which is of socioeconomic value, and which has been developed over the years within, and by, any ILC.

2. Consideration

2.1. In consideration of the Access Party entering into this Agreement, the Provider grants the Access Party access to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specified in SCHEDULE 1 and in the areas and terms specified in SCHEDULE 2 of this Agreement.

2.2. In consideration of the Provider granting access, the Access Party must access and use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only as specified in, an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2.3. The Access Party agrees to provide the Provider with the benefits specified in SCHEDULE 3 of this Agreement [Or the following benefits: to specify].

2.4. The Access Party is the applicant for, or intends to apply for, (or is in possession of) the appropriate permit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and the relevant Regulations to access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specified in SCHEDULE 1 of this Agreement and in the areas specified in SCHEDULE 2 of this Agreement.

2.5. This Agreement, in conjunction with an access permit issued under the Act, gives the Access Party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specified in SCHEDULE 1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clause 2 of this Agreement.

2.6. This Agreement constitutes a Benefit Sharing Agreement for the purposes of the Act.

3. Pre-conditions, commencement and duration of term

3.1. This Agreement takes effect only if:

- (a) the Prior Informed Consent of the Provider has been secured by the Access Party in compliance with the Act;
- (b) an access permit has been obtained by the Access Party for the proposed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specified in this Agreement in compliance with the Act;
- (c) the Access Party has obtained all other necessary consents, licences or permits under any written law to carry out the access.

3.2. The Access Party must supply the Provider with certified copies of the documents signifying the consents, permit and agreement referred to in clause 3.1.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Agreement.

3.3. This Agreement commences on the date the last of the matters specified in clause

3.1 is complied with by the Access Party and the documents referred to in clause

3.2 are delivered to the Provider and the Agreement shall continue for a period of (state number of years) from the date of this Agreement.

4. Change of use

4.1. If the Access Party wishes to change the use of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from that specified in this Agreement, it must apply in writing to the Provider of its intention for the change of use.

4.2. The Provider in its discretion may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de to the request for the change in use.

- 4.3. The Provider may, if it accedes to any request by the Access Party for the change of use, require the Access Party to enter into fresh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 4.4. In such event, the fresh benefit sharing arrangements will supersede and replace the benefits stated in SCHEDULE 3 of this Agreement.
- 4.5. In all other aspects,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5. Records, Accounts and Inspection

- 5.1 The Access Party must supply to the Provider written report of the status and progres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cessed.
- 5.2 The report must be in both the English language as well as the Malay language and must be provided in both a hard and digital copy.
- 5.3 The report must be submitted to the Provider at four (4) monthly-intervals beginning from the date of commencement of this Agreement.
- 5.4 The Access Party must provide oral briefing to the Provider of the status and progres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relation to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cessed as and when requested by the Provider at a time and place mutually agreed to by the Parties.
- 5.5 The Access Party must:
- (a) Keep true and accurate accounts and records in sufficient detail showing the quantity, description and value of the products sold to enable the amount of all royalties or other sums payable under this Agreement to be determined;
 - (b) At the reasonable request of the Provider from time to time, allow the Provider or its

agent at the Provider's expense to inspect those accounts and records and, to the extent that they relate to the calculation of those royalties or other sums, to take copies of them;

- (c) At its own expense, obtain and submit to the Provider, within one (1) month after the end of each Year in respect of which royalties are payable under this Agreement, a certificate by the Access Party's auditors that the statement submitted to the Provider pursuant to Schedule 3, clause 1(a)(iv) in respect of each Quarter is true and accurate.

5.6 Following any inspection pursuant to clause 5.5(b), if the Provider's auditors certify to the Provider and the Access Party that the amount of royalties paid in respect of any Quarter Year pursuant to Schedule 1, clause 1(a)(i) falls short of the amount of Royalties which were properly payable in respect of that Quarter Year, the Access Party must within one (1) month of the date of the certificate pay the shortfall to the Provider, together with reasonable costs and expenses incurred by the Access Party in making the inspection.

5.7 The provisions of this clause 5 are to remain in force and effect after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until the settlement of all subsisting claims of the Provider under this Agreement.

6. Review

6.1 The benefit sharing provisions as specified in SCHEDULE 3 of this Agreement may be reviewed by the Parties.

6.2 A request for the review may be initiated by either Party to this Agreement by giving a notice in writing.

6.3 The Parties must agree on a date, time and place for the review.

6.4 Any change in the benefit sharing provisions must be agreed to by both Parties and signified by signing a new document setting out the changes. These changes will supersede the benefits set out in SCHEDULE 3 in so far as they cover the same subject matter.

6.5 The new document will supplement SCHEDULE 3 and be titled as 'Schedule 3A'. 6.6 In all other aspects,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7. No sharing, transfer or assignment

7.1 The Access Party must not share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cessed with, or transfer them to, a third party that is not a party to this agreement unless it has first obtained the consent in writing of the Provider.

7.2 The Provider may give its consent if the sharing is for the purpose of the furthe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if the Provider decides that its interest is not adversely affected.

7.3 The Provider shall not assign the benefi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o any person.

8. Confidentiality

8.1. The Parties must not use or disclose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other Party without their prior written consent.

8.2. Notwithstanding clause 8.1, confidential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without it constituting a breach of this Agreement where the information is:

- (a) in the public domain;
- (b) required by law to be disclosed;
- (c) disclosed to Party employees or agents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Agreement.

9. Indemnity

The Access Party must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Provider from and against any losses, damages, claims, demands, suits and liabilities that arise due to the Access Party's acts or omissions or that of its employees or agents.

10. Termination

10.1. The following events constitute causes for either Party to terminate this Agreement:

- (a) Where either Party is in breach of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and such breach is not remedied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written notice of the breach concerned;
- (b) Failure of the Access Party to make any payment that has become due;
- (c) Where the Access Party ceases to carry on business, enters into winding up, liquidation or bankruptcy proceedings.

10.2. Upon the occurrence of any of the events set out in clause 10.1, the aggrieved Party must send a written noti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e Agreement, provided that in respect of clause 10.1(b) the Provider may extend time for payment for such period as it deems fit and impose payment of ... (as agreed between parties) % per annum interest calculated on a daily basis for the late payment pro-rated to the period of the delay.

10.3. Upon the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the Access Party must

- (a) immediately cease the use of materials relating to the utilis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cessed under this Agreement as well as any research results and related data;
- (b) surrender to the Provider the said materials and any research results and related data.

10.4. The Provider may, in lieu of clause 10.3 (b), require the Access Party to dispose the materials and results and to provide evidence of this disposal to the satisfaction of the Provider.

10.5. The termination or expiry of this Agreement does not relieve the Access Party from its obligations to pay amounts due and owing to the Provider nor affect either Party's rights to receive and recover damages as a result of the breach.

11. Survival of Agreement

Without prejudice to clause 10.5,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following matters shall continue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 (a) Records, accounts and inspection as stated in clause 5.6;
- (b) Benefit-sharing;
- (c) Indemnity.

12. Settlement of disputes

12.1. In the event of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must seek solution by negotiation.

12.2. If no agreement can be reached by negotiation, the Parties may jointly seek the good offices of, or request mediation by, a third Party.

12.3. Any proceedings under this clause must be conducted with due regard to the customary laws, practices or protocols of the Provider.

12.4. Any expenses arising from the proceedings under this clause must be borne by the Access Party unless it is proved that the Provider is in breach of its obligations.

- 12.5. Either Party may initiate the proceedings under this clause upon giving the other Party two (2) month notice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do so.
- 12.6. Parties must, to the extent possible, continue to perform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even during the duration of the dispute proceedings save in respect of an obligation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dispute proceedings.
- 12.7.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prevent either Party from referring this matter to the court in Malaysia for adjudication after exhaustion of the processes provided in clauses 12.1 and 12.2 and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said exhaustion.

13. Access Party's further obligations

- 13.1. The Access Party must ensure that in carrying out the access it must not cause any adverse environmental impact.
- 13.2. The Access Party agrees to preserve and respect the Traditional Knowledge and practices of the Provider and other native communities so far as these are known, made known, or discoverable through due diligence [where applicable].
- 13.3. The Access Party is solely responsible for claims regarding its acts or omissions.
- 13.4. The Access Party must be responsible for the payment of any fees or expenses for securing any permit, licence or consent as applicable under the Act and any other written law or regulation.

14. The Provider

- 14.1 The Provider gives no warranties regarding the identity or quality of the Biological Resources or the information relating to the use of the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14.2 The Provider will not be liable for any damage to the Biological Resources or any habitat arising out of the activities of the Access Party.

14.3 The Provider, where the context admits, includes the members of the native community of the Provider.

15. General

15.1 The Agreement represent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y previous negotiations, discussions, terms or agreements are superceded by this Agreement.

15.2 If any part of this Agreement is held invalid, void or unenforceable it will be severable and not affect or invalidate this Agreement.

15.3 Any reference in this Agreement to the Provider must, where the context permits, refer to acts carried out on the written instructions and with the written authority of the Provider.

15.4 This Agreement does not constitute a partnership and the Parties do not represent each other, unless specifically agreed to in writing in any specific matter.

15.5 The laws of Malaysia shall apply to the whole of this Agreement, and each Party agrees to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Malaysian courts.

15.6 The Parties agree that in performing their respective duties they shall not undertake any activities deemed illegal under the laws of Malaysia.

15.7 All the terms and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must be binding upon and inur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where permitted.

15.8 The failure or delay of either Party to insist upon the strict performance of any of the

terms of this Agreement must not be construed as a waiver of the terms but the same shall continue and remain in force and effect.

15.9 The subject headings in this Agreement are included solely for the purposes of convenience and must not be deemed to explain the meaning, construction or interpretation of any provision in this Agreement.

15.10 Neither Party will be liable to the other on account of any default in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caused by Force Majeure.

15.11 Any notice required or permitted by this Agreement to be given to either Party must be in writing and must be addressed to the Party at the address set out below.
_____ (state address and names of the Party to whom notice must be given under this Agreement) _____ .

15.12 Unless expressly waived, time whenever mentioned shall be of the essence.

IN WITNESS the Parties have duly executed this Agreement on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번역) 4. 이익공유계약(안) 서식

이익공유계약 모델

(2017.3.10.)

제안된 이익공유계약 모델

이 계약은 ____년 ____월 ____일에 체결되었다.

당사자:

[법인의 경우]

(이름) (법인번호) (주소)

[개인의 경우]

(이름) (주민번호/여권번호) (주소)

그리고

(이름)(주민번호) _____(제공자)

[공동체의 경우]

(이름) (주민번호) _____(공동체)와 _____(제공자)를 대표

전문

- A. 접근 당사자는 본 계약의 SCHEDULE 1에 설명된 대로 제공자로부터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을 모색한다.
- B. 제공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러한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C. 접근 당사자는 2017년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 및 이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관련 규정 및 의정서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제공자의 사전통고승인을 얻었음을 보증한다.

이제 이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해야 한다.

접근이란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자연 서식지 또는 시장을 포함하여 생물자원이 보관, 재배 또는 발견되는 장소에서 생물학적 자원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당사자는 특정 생물자원 및/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추구하거나 부여받은 개인, 조직 또는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

계약이란 이 조항에 따라 수시로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는 본 문서 및 본 계약의 모든 양허표를 의미한다.

이 법은 2017년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법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 및 프로토콜을 참조한다.

이익이란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급부 또는 보상을 의미한다.

생물자원에는 유전자원, 생물체, 미생물, 파생물 및 유전자원의 일부, 생물체, 미생물 또는 파생물, 인류를 위한 실제적 또는 잠재적 사용 또는 가치가 있는 생태계의 개체군 및 기타 생물적 구성요소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개시 날짜는 [본 계약의 날짜 또는 기타 날짜]를 의미합니다.

상업적 사용/상업화는 모든 종류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생물학적 자원 또는 관련 전통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특허 출원, IPR 또는 기타 유형 또는 무형의 권리 획득과 같은 조치를 통해 생물학적 자원 및/또는 사용에서 생성된 제품의 판매, 임대, 라이선스 부여가 포

함된다. 여기에는 영리 단체에 생물학적 자원을 양도하는 행위와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이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해당 제품을 비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파생물은 생물학적 자원에서 파생, 개발 또는 합성된 자연 발생 생화학적 화합물을 의미하며,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자원, 부분, 조직 또는 추출물의 유전적 발현 또는 대사로 인해 발생한다.

불가항력이란 불가항력, 정부 조치, 또는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타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유전자원에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고 인류에 대한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균류 또는 기타 기원의 모든 물질이 포함된다.

지식재산권은 저작권, 상표, 산업 디자인, 특허 또는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 그러한 보호를 위한 모든 신청 및 관련 시기에 존재하는 관련 기밀 정보를 의미한다.

순 판매 가치는 모든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청구된 가격에서 판매세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공제 또는 고객에게 부여된 할인 또는 리베이트가 없다. [또는 실제로 부여된 일반 무역 할인, 판매 수수료, 포장, 보험, 운송(또는 운임) 비용, 판매세 및 수입 관세 또는 정부 부과금을 공제한 후 청구된 가격]

사전통고승인은 접근을 원하는 당사자가 제공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동의를 의미한다.

제품(들)은 생물학적 자원과 그 변형을 포함하여 접근한 관련 전통 지식으로 제조된 제품을 의미한다.

제공자는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 자원을 소유한 개인, 또는 자원이 법률에 의해 설정된 권리가 있는 토지에 있는 토착 및 지역 공동체, 또는 그들이 전통적 권리 보유자인 경우 토착 및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다. 지식과 맥락이 허용하는 경우 토착민 및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분기 연도는 개시일로부터 시작되는 기간 중 3개월의 각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이란 본 계약이 조항에 따라 계속 유효하도록 합의된 기간을 의미한다.

전통 지식에는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에 필수적이며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고 ILC 내에서 그리고 ILC에 의해 수년에 걸쳐 개발된 축적된 지식이 포함된다.

2. 고려사항

- 2.1. 본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를 고려하여 제공자는 접근 당사자에게 SCHEDULE 1 및 본 계약의 SCHEDULE 2에 지정된 영역 및 조건에 명시된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 2.2. 제공자가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접근 당사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대로만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에 접근하고 이를 사용해야 한다.
- 2.3. 접근 당사자는 본 계약의 SCHEDULE 3에 명시된 혜택을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2.4. 접근 당사자는 SCHEDULE 1, SCHEDULE 2에 명시된 생물자원[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 위해 법 및 관련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적절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이거나 접근 허가를 소유하고 있다.
- 2.5. 이 계약은 법에 따라 발급된 접근 허가과 함께 이 계약의 2항에 따라 이 계약의 SCHEDULE 1에 명시된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접근 당사자에게 부여한다.
- 2.6. 이 계약은 법의 목적을 위한 이익 공유 계약을 구성한다.

3. 전제조건, 시작, 기간

- 3.1.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효된다.
 - (a) 제공자의 사전통고승인은 법에 따라 접근 당사자에 의해 확보되었다.
 - (b) 법에 따라 본 계약에 명시된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에 대한 제안된 접근에 대해 접근 당사자가 접근 허가를 획득했다.
 - (c) 접근당사자가 기타 필요한 모든 동의, 라이선스 또는 모든 서면 법률에 따라 접근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3.2. 접근 당사자는 3.1항에 언급된 동의, 허가 및 동의를 나타내는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본 계약이 발효 되기 전에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3. 이 계약은 조항에 명시된 날짜에 시작한다.

3.1은 접근 당사자 및 절에 언급된 문서를 준수한다.

3.2는 제공자에게 전달되며 본 계약은 본 계약 날짜로부터 일정 기간(년) 동안 지속됩니다.

4. 용도변경

4.1. 접근 당사자가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의 용도를 본 계약에 명시된 용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변경에 대한 의사를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4.2. 제공자는 재량에 따라 사용 변경 요청에 대한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3. 제공자는 사용 변경에 대한 접근 당사자의 요청에 동의하는 경우 접근 당사자에게 새로운 혜택 공유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4. 그러한 경우 새로운 이익 공유 약정이 본 계약의 SCHEDULE 3에 명시된 이익을 대체한다.

4.5. 다른 모든 측면에서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5. 기록, 회계 및 감사

5.1 접근 당사자는 접근한 생물자원[및 관련 전통지식]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의 상태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5.2 보고서는 영어와 말레이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하드 카피와 디지털 카피로 제공되어야 한다.

5.3 보고서는 본 계약 개시일로부터 4개월 간격으로 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접근 당사자는 상호 동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공자가 요청할 때 접근할 수 있는 생물학적 자원[및 관

련 전통 지식]과 관련된 연구 및 개발의 상태 및 진행 상황에 대해 제공자에게 구두 브리핑을 제공해야 한다.

5.5 접근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이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모든 로열티 또는 기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판매된 제품의 수량, 설명 및 가치를 충분히 자세하게 보여주는 정확하고 정확한 계정 및 기록을 유지한다.
- (b) 때때로 제공자의 합당한 요청에 따라 제공자의 비용으로 제공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계정 및 기록을 조사하고 로열티 또는 기타 금액의 계산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 (c) 본 계약에 따라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연도 말 이후 1개월 이내에 자체 비용으로 접근 당사자의 감사관이 제출한 진술서가 제공자에게 각 분기와 관련하여 Schedule 3, 1(a)(iv)항에 따른 제공자는 사실이고 정확하다.

5.6 5.5(b)에 따른 검사 후, 공급자의 감사인이 제공자와 접근 당사자에게 Schedule 1에 따라 분기 연도에 대해 지불된 로열티 금액이 다음과 같다고 인증하는 경우, 조항 1(a)(i) 해당 분기 연도에 대해 적절하게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금액이 부족한 경우, 접근 당사자는 인증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근에 의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및 경비와 함께 부족분을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5.7 5항의 조항은 어떤 이유로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본 계약에 따라 제공자의 모든 존재하는 청구가 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6. 검토

6.1 본 계약의 SCHEDULE 3에 명시된 이익 공유 조항은 당사자가 검토할 수 있다.

6.2 검토 요청은 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개시될 수 있다.

6.3 당사자는 검토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6.4 이익 공유 조항의 모든 변경 사항은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며 변경 사항을 설명하는 새 문서에 서명하여 서명해야 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범위에서 SCHEDULE 3에 명시된 혜택을 대체한다.

6.5 새 문서는 SCHEDULE 3을 보완하며 제목은 'SCHEDULE 3A'이다.

6.6 기타 모든 측면에서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7. 공유, 이전 또는 양도 금지

7.1 접근 당사자는 먼저 제공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접근한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을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공유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7.2 제공자는 공유가 생물학적 자원[및 관련 전통 지식]의 추가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목적이고 제공자의 이익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동의할 수 있다.

7.3 제공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이익이나 의무를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다.

8. 기밀 유지

8.1. 당사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8.2. 8.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기밀 정보가 본 계약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고 공개될 수 있다.

- (a) 공개 영역에서
- (b) 법에 의해 공개되어야 함;
- (c) 본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자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공개한다.

9. 면책

접근 당사자는 접근 당사자 또는 그 직원이나 대리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 손해, 청구, 요구, 소송 및 책임으로부터 제공자를 면책하고 무해하게 해야 한다.

10. 해지

10.1. 다음 사건은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된다.

- (a)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위반하고 해당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 (b) 접근 당사자가 지불을 하지 않는 경우,
- (c) 접근 당사자가 사업 수행을 중단하고 청산, 청산 또는 파산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10.2. 10.1항에 명시된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10.1(b)항과 관련하여 공급자는 연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연체에 대해 매일 계산되는 연 이자율을 반영하여 해당 기간 동안 지불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3.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만료되면 접근 당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연구 결과 및 관련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협정에 따라 접근되는 생물학적 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의 이용과 관련된 자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한다.
- (b) 상기 자료, 연구 결과 및 관련 데이터를 제공자에게 양도한다.

10.4. 제공자는 조항 10.3(b) 대신에 접근 당사자에게 자료와 결과를 폐기하고 제공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러한 폐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0.5.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는 접근 당사자가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위반의 결과로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보상받을 양 당사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1. 계약의 존속

조항 10.5를 침해하지 않고 다음 사항과 관련된 조항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

- (a) 5.6항에 명시된 기록, 계정 및 검사
- (b) 이익 공유
- (c) 배상

12. 분쟁 해결

12.1. 본 계약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 12.2.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공동으로 제3자에게 주선을 요청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 12.3.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는 공급자의 관습법, 관행 또는 의정서를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12.4.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공자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접근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12.5.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렇게 하려는 의사를 2개월 전에 통지함으로써 이 조항에 따른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 12.6. 당사자는 분쟁 절차의 대상인 의무를 제외하고 분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각자의 의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 12.7. 본 계약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가 12.1항 및 12.2항에 제공된 절차를 완료한 후 그리고 해당 종료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말레이시아 법원에 회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13. 접근 당사자의 추가 의무

- 13.1. 접근 당사자는 접근을 수행할 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 13.2. 접근 당사자는 [해당되는 경우] 실사를 통해 알려지거나 알려지거나 발견될 수 있는 한 제공자 및 기타 원주민 공동체의 전통 지식 및 관행을 보존하고 존중하는 데 동의한다.
- 13.3. 접근당사자는 자신의 작위 또는 누락과 관련된 클레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 13.4. 접근 당사자는 법 및 기타 서면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 라이선스 또는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수수료 또는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14. 제공자

- 14.1 제공자는 생물 자원의 신원이나 품질 또는 관련 전통 지식의 사용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 14.2 제공자는 접근 당사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물학적 자원 또는 서식지의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14.3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제공자는 제공자의 원 공동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15. 일반

- 15.1 계약은 당사자 간의 전체 계약을 나타낸다. 이전의 모든 협상, 토론, 조건 또는 계약은 본 계약으로 대체된다.
- 15.2 본 계약의 일부가 무효,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분리 가능하며 본 계약에 영향을 미치거나 무효화되지 않는다.
- 15.3 본 계약에서 제공자에 대한 언급은 문맥이 허용하는 경우 서면 지침 및 제공자의 서면 권한에 따라 수행된 행위를 참조해야 한다.
- 15.4 이 계약은 파트너십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정 문제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서로를 대표하지 않는다.
- 15.5 말레이시아 법이 본 계약 전체에 적용되며 각 당사자는 말레이시아 법원의 관할권에 복종하는 데 동의한다.
- 15.6 당사자는 각자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말레이시아 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 15.7 본 계약의 모든 조건 및 조항은 허용되는 경우 당사자와 해당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구속력이 있고 이익이 되어야 한다.

15.8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조건의 엄격한 이행을 주장하지 않거나 지연된다고 해서 조건 포기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동일한 조건은 계속 유효하다.

15.9 본 계약의 주제 제목은 편의를 위해서만 포함되며 본 계약의 조항의 의미, 구성 또는 해석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5.10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으로 인한 본 계약 이행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11 본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주소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_____ (본 계약에 따라 통지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의 주 주소 및 이름)

15.12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언급된 시간이 핵심이다.

증거로 양 당사자는 위에 기재된 날짜와 연도에 본 계약을 적법하게 실행된다.

5. 서식-SCHEDULE 1

SCHEDULE 1

BIOLOGICAL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1. Biological Resources to be accessed:

(Include name of the species, or lowest level of taxon, to which the resources belong (if known). If the species composition of samples is not known, list the sampling method(s) and the types of organisms likely to be collected.)

2.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clude details of the knowledge, its use, source of the knowledge, such as, for example, whether the knowledge was obtained from scientific or other public documents, from the Provider or from another group of indigenous persons.)

3. Storing of data and other materials during the Agreement:

(Include details of the location and type of storage of samples, the location and format of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documentation, and other materials used by the Access Party. Also include details of any biological resources the Access Party may retain after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4. The use for which the Biological Resource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s being accessed.

(State for example: with a view to develop a product in the field of pharmaceutical, nutraceutical, cosmetic, food etc.)

(번역) 5. 서식-SCHEDULE 1

SCHEDULE 1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1. 접근할 생물자원

(자원이 속한 종의 이름 또는 가장 낮은 분류군을 포함. 표본의 종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표본추출 방법과 채집될 가능성이 있는 생물의 종류를 기재)

2. 관련 전통지식:

(예를 들어, 지식이 과학 또는 기타 공개 문서, 제공자 또는 다른 토착민 그룹에서 획득되었는지 여부와 같은 지식, 지식의 사용, 지식 출처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

3. 계약기간 동안 데이터 기타 자료 저장:

(샘플 저장 위치 및 유형, 관련 전통지식 문서의 위치 및 형식, 접근 당사자가 사용하는 기타 자료를 포함합니다. 또한 접근 당사자가 계약 종료 후 보유할 수 있는 모든 생물 자원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

4.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 목적:

(예: 제약, 기능식품, 화장품, 식품 등의 분야에서 제품을 개발할 목적으로)

6. 서식-SCHEDULE 2

SCHEDULE 2 AREA FOR ACCESS AND TERMS RELATING THERETO

1. **Access Area**: (List the areas from which the Biological Resources must be taken, including latitude and longitude references.)
2. **Time and Frequency of Entry to Access Area**: (List the anticipated dates and times of entry to the access area(s), including the duration of each visit.)
3. **Quantity of Biological Resources to be Collected**: (List the anticipated quantity of each Biological Resource to be collected in the access area.)
4. **Quantity of Biological Resources to be Removed**: (List the quantity of each Biological Resource to be removed from the access area.)
5. **Potential Environmental Impacts**: (List the potential environmental and biodiversity impacts of accessing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the efforts that must be made to avoid these impacts.)

The Access Party must supply details of each information for verification by the Provider.

(번역) 6. 서식-SCHEDULE 2

SCHEDULE 2 접근 영역 및 관련 조건

1. 접근 지역: (위도 및 경도 참조를 포함하여 생물자원을 가져와야 하는 지역을 나열)
2. 접근 구역에 입장하는 시간 및 빈도: (각 방문 기간을 포함하여 접근 영역에 대한 예상 입장 날짜와 시간을 나열)
3. 수집할 생물자원의 수량: (접근지역에서 수집될 각 생물자원의 예상 수량을 기재)
4. 제거할 생물학적 자원의 수량: (접근 영역에서 제거할 각 생물자원의 수량을 나열)
5. 잠재적 환경 영향: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환경 및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이러한 영향을 피하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을 나열)

접근 당사자는 공급자의 확인을 위해 각 정보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7. 서식-SCHEDULE 3

SCHEDULE 3

BENEFITS

The benefits to be provided by the Access Party to the Provider are as follows (subject to negotiation and agreement by the Parties):

1. Monetary benefits

- a. An up-front payment of RM _____, payable within _____ days of the commencement of the Agreement;
- b. Milestone payments of RM _____ payable upon _____ (state the event upon completion of which the payment must be made);
- c. Payment for raw material supplied at the rate of _____ ;
- d. Payment for collection of materials in the sum of _____ ;
- e. Payment for other activities (distilling etc) payable as follows: _____.

Royalties: rate and modalities of payment

- i . If a product or produc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cessed is commercialised, used or otherwise disposed of on a commercial basis at any time, a minimum rate of RM _____ per year or _____ % of the Net Sales Value of those products (whichever is higher) must be paid by the Access Party to the Provider ('Royalties').
- ii . The sum must be paid to _____ (designate account and account holder).
- iii . The sum must be paid within _____ days of receipt of the payments received from the sales of the product or products.
[OPTION: The royalties must be paid within days of each Quarter Year.]

- iv. Withindays after each Quarter Year the Access Party must send to the Provider written statements showing:
- (a) The quantity of the products sold or otherwise disposed of on a commercial basis by the Access Party, its servants or agents;
 - (b) The Net Sales Value in respect of that quantity of Products disposed of on a commercial basis by the Access Party, its servants or agents during the Quarter Year;
 - (c) The amount of Royalties payable within that Quarter Year;
- And the Access Party must forthwith pay to the Provider the Royalties in respect of that Quarter Year in accordance with clause 1(i) of this Schedule.
- v. The Royalties due must be made without deduction of withholding taxes or duties that may be imposed except in so far as the Access Party is required to deduct the same to comply with any applicable law.
- vi. The payment of the Royalties must be accompanied with a statement setting out the types of Products sold, the total Net Sales Value and the period to which the Royalties payment relate.

2. Non-monetary benefits

i . Technology transfer

The Access Party must provide the following to the Provider and its members:

- (a) Train / employ local researchers from amongst the Provider and its members in scientific and practical work;
- (b) Establish facilities for research or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ccessible to the Provider and its members;
- (c) Share samples of material / deposit copies of specimens in repositories designated by the Provider, if required and where appropriate;
- (d) Transfer technologies relating to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biological

resources accessed to the Provider, including technology protected by IPRs and / or relevant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tiliz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 (e) Share research results, including scientific data, in a format suitable for the Provider;
- (f) Admittance to any ex-situ facilities of the Access Party of biological / genetic resources and databases;
- (g) Provide access to scientific information in a form legible to the Provider relevant to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i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 (a) The Access Party agrees to joint ownership of IPRs with the Provider arising out of the utilisation of the Biological Resource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ccessed.
- (b) The Access Party must notify the Provider before applying for IPRs.

iii. Other non-monetary benefits

The Access Party must provide the following to the Provider: (Provider to consider, as appropriate, as and if agreed to by Access Party)

- (a) Acknowledgement of contribution in publications and / or products
- (b) Strengthening capacities for technology transfer to Providers
- (c) Develop institutional capacity-building;
- (d)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strengthen the capacities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access regulations;
- (e) Make contributions to the local economy;
- (f) Provide food and livelihood security benefits;
- (g) Develop infrastructure of social amenities (roads, bridges etc);
- (h) Provide assistance for educational needs.

(번역) 7. 서식-SCHEDULE 3

SCHEDULE 3

이익

접근 당사자가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당사자의 협상 및 합의에 따름).

1. 금전적 이익

- a. 선지급: 금액: RM _____, 계약 개시일 이내에 지불해야 함
- b. 마일스톤 지급: 금액: RM _____ 기한: _____
- c. 공급된 원자재 비용(비율: _____)
- d. 자원수집 비용: _____.
- e. 다음과 같이 지불해야 하는 기타 활동에 대한 지불: _____.

로열티: 요율 및 지불 방식

- i. 접근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품 또는 제품이 상업화, 사용 또는 상업적 기반으로 언제든지 처분되는 경우 연간 최소 _____ RM 또는 해당 제품의 순 판매 가치의 _____%(둘 중 더 높은 쪽)는 접근당사자가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로열티').
- ii. 금액은 _____(계정 및 계정 소유자 지정)에게 지불해야 한다.
- iii. 금액은 제품 또는 제품의 판매로부터 받은 지불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_____일 이내에 지불해야 한다.
[OPTION: 로열티는 _____ 각 분기 연도의 일.]
- iv. 매 분기 연도 이후 _____일 이내에 접근 당사자는 다음을 보여주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자에게 보내야 한다.
 - (a) 접근 당사자,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달리 처분한 제품의 수량
 - (b) 분기 연도 동안 접근 당사자,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이 상업적으로 처분한 제품 수량에 대한 순 판매 가치;

(c) 해당 분기 연도 내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금액

그리고 접근 당사자는 본 명세서의 1(i)항에 따라 해당 분기 연도에 대한 로열티를 제공자에게 즉시 지불해야 한다.

v. 사용료는 접근 당사자가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공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과될 수 있는 원천징수세 또는 관세를 공제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

vi. 로열티 지불에는 판매된 제품의 유형, 총 순 판매 가치 및 로열티 지불과 관련된 기간을 설명하는 명세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2. 비금전적 이익

i. 기술이전

접근 당사자는 제공자와 그 구성원에게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 (a) 과학 및 실제 작업에서 제공자 및 그 구성원 중에서 현지 연구원을 훈련/고용
- (b) 제공자와 그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는 연구 또는 통신 기반 시설을 구축
- (c) 필요한 경우, 적절한 경우 제공자가 지정한 저장소에 자료 샘플을 공유하거나 견본 사본을 보관
- (d)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 및/또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여 제공자가 접근하는 생물자원의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
- (e) 과학적 데이터를 포함한 연구 결과를 제공자에게 적합한 형식으로 공유
- (f) 생물/유전자원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당사자의 모든 현지의 시설에 대한 승인
- (g)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제공자가 읽을 수 있는 형식으로 과학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

ii. 지적 재산권(IPR)

- (a) 접근 당사자는 접근한 생물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IPR과 제공자의 공동 소유권에 동의
- (b) 접근 당사자는 IPR을 신청하기 전에 제공자에게 알려야 함

iii. 기타 비금전적 혜택

접근 당사자는 다음을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출판물 및/또는 제품에 대한 기여 인정
- (b) 제공자에 대한 기술 이전 역량 강화
- (c) 제도적 역량 강화를 개발
- (d) 접근 규제의 관리 및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개발을 지원
- (e) 지역 경제에 기여
- (f) 식량 및 생계 보장 혜택을 제공
- (g) 사회적 편의시설(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을 개발
- (h) 교육적 필요에 대한 지원을 제공

8. 서식-법정신고서

Statutory Declarations

Annex 4A

To:

(insert name of relevant Competent Authority)

STATUTORY DECLARATION

I, (insert name of applicant and NRIC No. / Passport No.) of (insert address) do solemnly and sincerely declare that: –

- 1) I am not an undischarged bankrupt;
- 2) I have not committed any act of bankruptcy as defined under Section 3 of the Bankruptcy Act 1967.
- 3) I am not in default under any agreement to which I am a party or by which I may be bound and there is no pending litigation, arbitration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s the case may be, that might materially affect my solvency.
- 4) I make this declaration in full knowledge and awareness of your reliance on this declaration as an inducement or basis to issue permit to me or to a third party.
- 5) I have not committed an offence and there is no pending litigation, arbitration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against me under the Access to Biological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2016 (“the Act”) or any of its regulations.
- 6) I am fully aware that it is a criminal offence to induce you to issue the permit on the basis of a false declaration.

- 7) Should during the term of the permit issued under the Act you find this declaration to be false or incorrect, you are at the liberty to:
- a) cancel the permit,
 - b) demand the return of all the biological resources accessed;
 - c) prohibit any further use of such biological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to the biological resources and any information relating thereto and research results accrued therefrom; and I will do so without any delay or dispute.
- 8) I undertake to notify you immediately should any of the following occur after this declaration:
- a) Adjudged a bankrupt; or
 - b) Committed an offence under the Act; or
 - c) Subject to any litigation, arbitration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under the Act or which may affect my solvency; or
 - d) Occurrence of any event that may affect my solvency.

And I make this solemn declaration conscientiously believing the same to be true, and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e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60.

Subscribed and Solemnly
Declared by the above named
At
In the State of
This day of

Before me,

Commissioner for Oath

(번역) 8. 서식-법정신고서

법정신고서

Annex 4A

To:

(관련 책임기관명 기입)

법정신고

I. (주소 기입) 의 (신청자 이름/ 국가식별번호/ 여권번호 기입)은 엄숙하고 성실하게 다음을 선언합니다.

- 1) 나는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가 아닙니다.
- 2) 본인은 1967년 파산법 3장에 정의된 파산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 3) 본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될 수 있는 계약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태가 아니며, 경우에 따라 본인의 지급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류 중인 소송, 중재 또는 행정 절차가 없습니다.
- 4) 본인은 본인 또는 제3자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한 유도 또는 근거로서 귀하가 이 선언문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인식하면서 이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 5)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법 또는 그 규정에 따라 계류 중인 소송, 중재 또는 행정 절차가 없습니다.
- 6) 허위신고를 근거로 허가증 발급을 유도하는 것은 범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7) 법에 따라 발급된 허가 기간 동안 이 선언이 거짓이거나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a) 허가를 취소하고,
 - b) 접근한 모든 생물학적 자원의 반환을 요구한다.
 - c) 그러한 생물자원,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 이와 관련된 정보 및 그로부터 발생한 연구 결과의

추가 사용을 금지합니다. 지연이나 분쟁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8) 이 선언 이후에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귀하에게 통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 a) 파산 신고를 받은 경우
- b) 법에 따라 범죄를 범한 경우
- c) 이 법에 따른 소송, 중재 또는 행정 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본인의 지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d) 나의 지불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나는 1960년 제정된 법정신고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선언합니다.

보증인

날짜:

신청자 서명

9. 사바 주 접근신청 서식²⁾

사바생물다양성 이사회
 접근신청서 서식
 (2000 사바생물다양성법 15(1)절 및 17절)

여권 사진

신청일자:

1. 신청자 세부사항

Title (Mr., Ms., 또는 Miss 등)	
성명	
직업	
직위	
국적	
MyKad* (의무사항: MyKad의 사진 제공)	
여권번호* (여권의 사진 제공**)	
연구소/기관	
회사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추가 이메일 주소	
팩스번호	
관련 자격 및 경험	

* 해당되지 않는 경우, 삭제
 ** 본인의 세부사항 표기된 페이지

그림으로 신청하는 경우(동일한 연구주제, 방법, 위치, 지역공동연구자, 기관), 1개의 신청서 제출 가능. 연구/수집을 수행하는 신청자만 지원할 것.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 접근과 반출 안내서 -말레이시아와 일본-, 2019.

이름	
직위	
연구소/기관	
이메일 주소	
추가 이메일 주소	
여권번호 (선택)	
국적	
관련 자격 및 연구에서의 역할	

2. 신청 유형 (1가지 선택)

신규	
갱신	

3. 접근허가서 갱신해야 하는 사유 작성 (접근허가서 갱신의 경우에 해당)

연구 미완료	
추가 연구지역/위치	
생물자원 추가목록	
연구방법 추가내용	
기타 (명시)	

참고: 연구 제목/방법/위치/지역공동연구자/연구소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접근허가서 신청이 필요함

4. 본 연구에 협력하는 말레이시아(사바) 연구소/기관의 세부사항(연구소/기관의 지원 서한 제출)

말레이시아 연구소/기관	주소 및 연락처(전화/팩스)	담당자

5. 본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소/기관의 세부사항 (연구소/기관의 지원 서한 제출)

연구소/기관	주소 및 연락처(전화/팩스)	담당자

6. 본 연구에 협력하는 지역공동연구자/연구파트너 세부사항 (지역공동연구자/연구파트너의 동의 서한 제출)

성명	
직함	
연구소/기관	
이메일 주소	
연락처	

7. 연구목적 (Note 1 참고), 한가지 선택

비상업적 목적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	
---------	--	-------------------	--

8.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회사 프로펠 작성 (업무활동 및 관련 정보)

9. 연구제목

10. 아래 양식에 따라, 접근신청에 대한 연구제안서 첨부 (경신의 경우, 진행보고서 첨부)

- a. 연구제안서/프로젝트 제목
- b. 연구제안서/프로젝트 서문
- c. 연구제안서/프로젝트 목적
- d. 문제기술서
- e. 문헌조사
- f. 연구방법
- g. 예상 연구일정
- h. 예상되는 연구제안서/프로젝트의 결과 또는 사바주에 대한 기여
- l. 참고문헌

11. 학술적 연구목적 기술(박사, 석사, 기타 등). 학위목적미 아닌 경우, 내용 명시

12. 연구기간

--

13. 접근일자

시작일		종료일	
-----	--	-----	--

14. 본 프로젝트의 기밀사항 세부사항

--

15. 토착지역공동체의 전통지식 관련 생물자원에 접근하는 경우, 전통지식 보유자와 접근 지역(마을) 명칭

토착민/지역공동체	정확한 위치(마을 또는 지역 명칭)

16. 목적(Note 3 참고)을 포함한 접근(Note 2 참고) 설명 및 생물자원과 접근 위치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방법 설명

접근에 대한 설명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17. 접근이 발생하는 지역의 위도와 경도 세부사항. 지역지도 또는 여행경로를 별지로 제출.

지역	
위도/경도:	
지도 첨부	

18. 접근지역의 자원제공 관리자의 지원/허가 서한 제출

19. (a) 동 지역에서 재접근(re-collect) 의향이 있는가?

--

(b) 그럴 경우, 얼마나 자주 접근할 것인가?

--

20. 접근 방법

운송수단(선박/차량)	
기타의 경우(영사):	
장바:	

21. 접근 생물자원, 물량 및 샘플링 방법

일반명	분류군 (구체적인 분류수준)	물량/수량/용량	샘플링 방법

22. 생물자원의 활용

--

23. 생물자원 접근으로 인한 생물다양성보전에 대한 예책 설명, 접근지역에 대한 예책 명시.

--

24. 21번 항목에서 명시된 종에 대한 접근으로 인해 CITES 목록의 종에 끼칠 영향

목록의 종	샘플링 물량/수량/용량

25. 21번 항목에서 명시된 종에 대한 접근으로 인해 1997년 야생생물보존법 상의 종에 끼칠 영향 (Note 5 참고)

목록의 종	샘플링 물량/수량/용량

26. 24~25년 목록의 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방법

27.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이 사바주 이외로 반출을 포함하고 있는가?

YES		NO	
-----	--	----	--

생물자원을 사바주에서 반출하려는 목적 명시

생물자원을 사바주에서 반출하기 위해서는, 연구자 또는 수집가는 사바생물다양성센터를 통해 사바생물다양성이사회에게 반출허가서를 신청해야 함.

28. 사바에서 taxonomic duplicate 위치

29. 접근된 자원의 주요 도착지 상세내역 (연구소/기관)

30. R&D 수행할 연구소/기관의 명칭 및 주소

31. 접근된 자원의 추가 도착지

32. (a) 연구에 제3자가 개입할 가능성

(b) 해당 시, 상세내용 작성

33. 사바 또는 관련 토착지역공동체에 대한 예상되는 (금전적/비금전적) 혜택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환경적, 사회적 또는 기타)

34. 이익공유 메커니즘

서약서

본인은 신청서에 제공한 정보가 사실임을 서약하며, 어떠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서명:

성명:

직함:

공식 소인(개인 이외 신청자)

장소:

일자:

Note 1

비상업적 목적: 생물자원이 상업적 또는 잠재적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에 이용되지 않는 경우

상업적 또는 잠재적인 상업적 목적: 생물자원이 잠재적으로 상업적인 의약, 농업, 산업 또는 기타 응용(예, screening for bioactivity) 목적으로 연구에 사용되는 경우

Note 2

접근 설명: 생물자원을 샘플링하고 연구하는 방법 설명. 사용되는 장비(시설) 세부사항과 이러한 연구방법이 환경과 샘플링한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지 명시. 연구행동 강령 또는 윤리승인에 대한 참조를 포함.

Note 3

연구의 목적: 연구프로젝트의 목적과 관련 정보를 설명

Note 4

위치/지역	지원관리자
Forest Reserve	Sabah Forestry Department
Wildlife Sanctuary and Wildlife Conservation Area	Sabah Wildlife Department
Parks (Terrestrial and Marine)	Sabah Parks
Maliau Basin Conservation Area	Maliau Basin Management Committee
Imbak Canyon Conservation Area	Imbak Canyon Management Committee
Danum Valley Conservation Area	Danum Valley Management Committee
State Lands	Lands and Surveys Department
Marine Water	Sabah Fisheries Department

Note 5

채집하는 모든 종은 명시되어야 함. 보호종은 다음을 참조: <http://www.sabah.gov.my/jbl/>

Note 6

집근허가 시, 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소인을 받아서 SaBC로 제출

10. 사바주 물질반출신고서

MATERIAL TRANSFER DECLARATION FORM

IMPORTANT NOTE: This form must be filled by local collaborator and submit to Sabah Biodiversity Centre by post or email to sabc@sabah.gov.my as soon as the samples are packed and verified. Kindly ensure your counterpart has **comply with other applicable written laws governing the export of the said material from Sabah.**

Particulars

Name (<i>licensee</i>):
Organisation:
Transfer licence no.:
Transfer licence expiry:
Actual export date:
Method of export (<i>indicate airline/courier company</i>):

Verifications

Note: Actual samples, the amount – within the approved transfer licence. You may attach separate sheet of paper to list down samples but it must be **stamped and signed** by you on every page.

No. of shipment permitted: <input type="checkbox"/>	This is shipment no.: <input type="checkbox"/>	
Family	Scientific name	Amount, types of samples

DECLARATION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form is within the permission granted in the transfer licence for my counterpart and I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incorrect/ wrong information.

Packed by:	Verified by (<i>local collaborator</i>):
Passport/MyKad No.:	Organisation:
Organisation:	Signature:
Signature:	Official stamp:
Date:	Date:

(번역) 10. 사바주 물질반출신고서

물질반출신고서 서식

(MATERIAL TRANSFER DECLARATION FORM)

주의사항: 본 서식은 지역공동연구자가 작성해야 하며, 샘플이 준비되고 확인되면 바로 사바생물다양성센터로 우편 또는 이메일(sabc@sabah.gov.my)로 제출되어야 함. 연구협력자는 해당 물질의 사바주로부터 반출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함.

세부사항

성명(승인받은 사람 또는 기업):

소속:

반출허가서 번호:

반출허가서 만료일:

반출일자:

반출방법(항공/운반회사):

확인사항

참고: 반출허가서에서 승인된 실제 샘플 및 물량, 샘플목록을 별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페이지에 본인의 서명을 해야 함.

허가된 운송번호(), 본 운송번호()

과(Family)	학명(Scientific name)	샘플 물량 및 종류

서약

본인은 본 서식에 작성한 정보가 반출허가서에서 승인된 정보이고, 잘못된 정보는 모두 본인 책임임을 서약합니다.

포장지:	확인자(지역공동연구자):
여권/Mykad 번호:	소속:
소속:	서명:
서명:	공식 소인:
일자:	일자:

11. 사바주 법정신고서 서식

STATUTORY DECLARATION

I Passport No. of

do solemnly and sincerely declare that I -

- (a) undertake not to use the biological resources or associated relevant knowledge, to which the application relates, for commercial purposes;
- (b) undertake to give a written report on the results of any research on the biological resources or associated relevant knowledge to each local collaborator and the Biodiversity Centre;
- (c) undertake to return the biological resources to local collaborator once the research is completed;
- (d) undertake not to give a sample of the biological resources to any person, other than an institution referred to in the access application form, without the permission of each local collaborator and the Sabah Biodiversity Council;
- (e) undertake not to apply for patent and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 outcome of the research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Sabah Biodiversity Council; and
- (f) undertake not to allow others to carry out, research or development for commercial purposes on any genetic resources or biochemical compounds comprising or contained in the biological resources or associated relevant knowledge unless a benefit-sharing agreement has been entered into.

And I make this solemn declaration conscientiously believing the same to be true, and by virtue of the provisions of the Statutory Declarations Act 1960.

Subscribed and solemnly declared by the abovenamed

..... at.....

in the State of this..... 20.....

Before me,



.....
(Signature of Applicant)

.....

(Signature of Sessions Court Judge,

Magistrate or Commissioner for Oaths)

(번역) 11. 사바주 법정신고서 서식

법정신고서

본인 (신청인 성명) (여권번호)은/는, 아래의 사항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선언합니다.

본인은

- (a) 신청한 생물자원 또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 (b) 생물자원 또는 생물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모든 연구결과의 서면보고서를 각 지역공동연구자와 생물다양성센터로 제출할 것이며,
- (c) 연구가 종료되면 생물자원을 지역공동연구자에게 반납할 것이며,
- (d) 생물자원 샘플을, 지역공동연구자와 생물다양성센터의 허가 없이, 신청서에 명시한 기관 이외의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 (e) 사바생물다양성이사회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 및 기타 지식재산권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며,
- (f) 이익공유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한, 생물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에 포함된 유전자원 또는 생화학적 성분을 상업적 목적으로 연구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이 선언이 진실이고 1960년 법정신고법의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상기인이 서명하고 서약함

(신청인 서명)

_____에서
_____주에서
__년 __월 __일

본인 앞에서,

(법원판사, 치안판사 또는 선서 임회관)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 ⑭

말레이시아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

발행일 2021년 11월 11일

발행인 국립생물자원관장

기 획 장정익, 박찬호, 이재호

집 필 이준표, 허 인, 박정훈

발행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www.nibr.go.kr / www.abs.go.kr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발간등록번호

ISBN

※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생물자원관에 있습니다.

